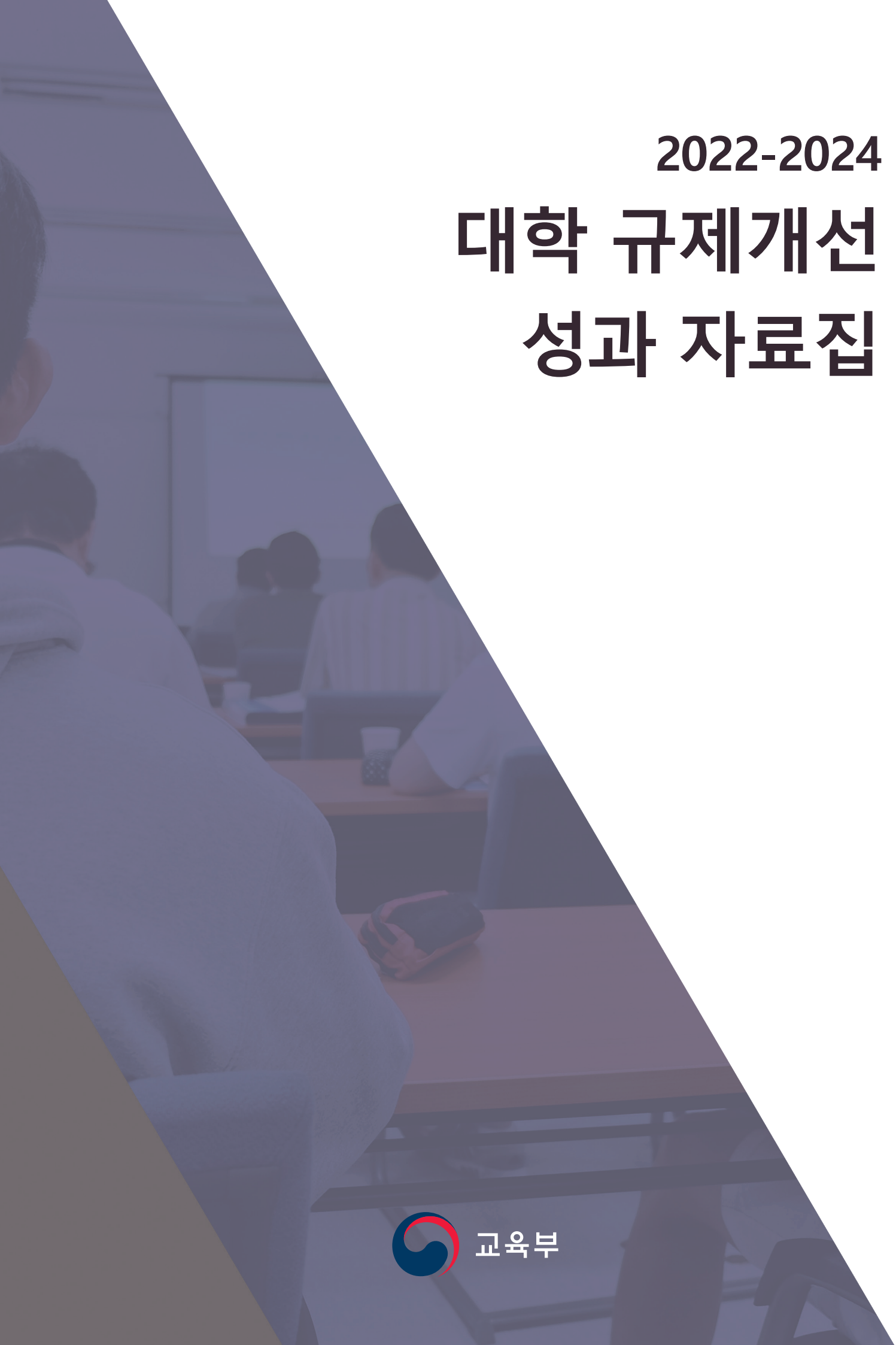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교육부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교육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최은희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은 그동안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 사회 변화 가속화, 학령인구의 감소 등에 따라 사회가 대학에게 요구하는 역할도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은 미래 변화에 대응할 문제 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고 생애주기에 걸친 교육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산업체 등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발전의 허브로 기능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더욱 빠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국정과제 83번)'이라는 고등교육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총 100여 건의 규제(24개 법령등 제·개정)를 개선하여 대학이 여건에 따른 전략적 특성화와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현장의 개선요구가 컸던 학사와 재정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하여 학교와 학생의 적극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규제개선을 통해 학생들은 산업체와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등에서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유휴재산을 활용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현장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하는 등 보다 탄탄한 교육 지원여건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은 지난 2년간의 지속적 규제개선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 등의 개정 주요 내용과 시행시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모쪼록 이 자료집이 고등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혁신적 시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충실한 안내서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담대한 대학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적극적으로 현장의 규제 개선사항을 건의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대학규제개혁협의회 위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여전히 숨어 있는 곳곳의 규제들을 걷어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혁신적 성과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인재정책실장 **최 은 희**

01.「고등교육법」 법률 9

1-1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허용 10

02.「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11

2-1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30%) 2028년까지 연장 12
2-2 전임교원의 교수시간 자율 운영 13
2-3 대학의 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성 향상 14
2-4 소단위 전공과정 운영 근거 마련 15
2-5 둘 이상의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 운영 허용 16
2-6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 자율화 17
2-7 산업체·연구기관 등 학교 밖 기관에서 협동수업 허용 18
2-8 교육과정 공동운영관련 학점인정의 범위·기준의 대학 자율화 19
2-9 예비군 훈련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 규정 명시 20
2-10 전공자율선택제의 시행 근거 마련 21
2-11 경영등관련대학원 종류의 세부 구분 폐지 22
2-12 의대 등 수업연한 자율 운영 23
2-13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전학년 전과 가능) 24
2-14 대학의 학위논문 심사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 25
2-15 시간제등록생의 비수도권 대학 선발인원 확대(10%→30%) 26
2-16 원격대학에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허용 27
2-17 시간제등록생의 학기당 수강학점 한도 확대 28
2-18 산업체위탁교육의 범위를 석·박사학위과정까지 확대 29
2-19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완화 등 대학 자율성 제고 30
2-20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평가업무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위탁 31
2-21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허용 32
2-22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완화 33

03.「국립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34

3-1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 제고 35
3-2 국립대학에 소재지 외 교육시설의 설치·운영 허용 36
3-3 국립대학 간 통·폐합 절차에 관한 법령상 근거 신설 37

04.「대학설립·운영규정」 대통령령 38
4-1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내 대학원대학 등의 설립(캠퍼스이전) 요건 완화 39
4-2 첨단산업분야 학과증설(정원증원) 및 정원 자체조정 시 교원 확보기준 완화 40
4-3 학생정원 조정 및 학위과정 간 입학정원 상호조정의 유연화 41
4-4 단일 교지의 인정 범위 확대 42
4-5 전문대학원 신설 시 전용 교사시설 및 교원 확보요건 폐지 43
4-6 박사과정 설치 시 확보 교원의 자격 요건 대학 자율 운영 44
4-7 첨단산업분야 학과증설(정원증원)의 요건 완화 45
4-8 대학 통·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 폐지 46
4-9 다른 국내대학과 첨단산업분야 공동교육과정 운영시, 학과증설(정원증원) 요건 완화 47
4-10 국립대학 대학원의 첨단산업분야 학과증설(정원증원)관련 교원 확보요건 완화 48
4-11 학과(학부)의 신설·통합 또는 학과등 입학정원 조정시, 교원 확보요건 폐지 49
4-12 국립대학의 해기사등 특정분야인력 양성관련 교원 확보비율 완화 50
4-13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의 학과 개편 및 정원 운영 자율성 제고 51
4-14 모든 대학 및 대학원에서 입학정원 상호조정 허용 52
4-1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간 입학정원 상호조정 비율 1:1 적용 53
4-16 학부-대학원 간 학생정원 상호조정 요건 폐지 54
4-17 대학의 통·폐합 유형 확대 55
4-18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폐지 56
4-19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 요건 완화 57
4-20 대학의 일부를 소재지 외 국내의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경우 교사 요건 폐지 58
4-21 첨단산업분야 학과등을 대학의 소재지외 운영시, 교지 요건 폐지 59
4-22 대학의 교지기준 면적 요건 완화 60
4-23 전문대학원 신설 시 교원 확보율 산정 기준 완화 61
4-24 수익용기본재산 충족 기준 완화 62
4-25 교사 확보율 100% 초과 시, 교사·교지 임차 허용 63
4-26 초과 유휴교사에 대한 임대 허용 64
4-27 캠퍼스 위치 변경 시 충족 필요 요건 완화 65
4-28 주야간 학생 정원 조정 시 충족 필요 요건 완화 66
4-29 캠퍼스 간 정원 이동 시 충족 필요 요건 완화 67
4-30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 확대(1/5→1/3) 68
4-31 재학생수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 69

4-32 둘 이상의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학교급별 법인 분리 허용 70

05.「사립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71

5-1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매도·증여·교환등) 규제 완화 72

5-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차입·융자) 규제 완화 73

5-3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의무부담·권리포기) 규제 완화 74

5-4 학교법인의 재산 중 처분할 수 있는 재산 범위의 확대 75

06.「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대통령령 76

6-1 사이버대학의 교원 확보기준 완화 77

6-2 사이버대학의 명칭 자유화 78

6-3 사이버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 확대 79

6-4 사이버대학에 두는 특수대학원의 신설에 관한 인가제도 폐지 80

6-5 사이버대학의 학과등에 조교 확보의무 폐지 81

6-6 사이버대학을 둔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 완화 82

6-7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의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허용 83

07.「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84

7-1 동일한 계약학과 내에서 둘 이상의 산업체 등을 선택하여 지원 허용 85

7-2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분야의 계약학과등의 학생정원 제한 완화 86

7-3 산업체등이 부담하는 계약학과등의 운영경비 부담 완화 87

7-4 불가피한 사유 시 계약학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허용 88

7-5 학과·학부의 학생정원을 활용한 첨단산업분야 학과·학부의 신설 허용 89

7-6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확대 90

7-7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범위 확대 91

8.「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92

8-1 학생정원별 교사기준면적 산정방식의 유연화 93

8-2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산정방식 개선 94

8-3 유휴교사를 편익시설로 임대 허용 95

9.「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교육부령 96

9-1 사학기관의 예·결산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 등 개선 97

10.「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교육부훈령 98
10-1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의 운영 범위를 확대 99
10-2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자율화(사전승인·분야제한 폐지등) 100

11.「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교육부훈령 101
11-1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절차 등 간소화 102

12.「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교육부훈령 103
12-1 학교 밖 수업 운영 근거 마련 및 이동수업에 대한 교육부의 사전승인제 폐지 104

13.「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교육부예규 105
13-1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계획의 사후 변경 허용 106

14.「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교육부고시 107
14-1 첨단산업분야의 계약학과 설치권역을 전국으로 확대 108
14-2 이동수업 운영관련 대학의 자율적 운영 허용(교육부 사전심의 폐지) 109

15.「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교육부고시 110
15-1 통·폐합 시 대학의 조직 개편 기준 유연화 111
15-2 국립-공립대학 간 통·폐합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근거 마련 112

16.「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113
16-1 국외분교 설립 시 교육부장관의 컨설팅 관련 조항 폐지 114

17.「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 교육부고시 115
17-1 첨단산업분야 인력양성·공동교육과정 운영시 대학원 학과증설(정원증원) 허용 116

18.「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 교육부고시 117
18-1 사립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의 제한적 처분 허용 118

19.「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교육부고시 119
19-1 박사학위과정 신설관련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을 대학 자율로 결정토록 완화 120

20.「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교육부고시 121
20-1 대학의 통폐합 요건 중 교지요건 폐지 122

21.「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123
21-1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지역(수도권 제외) 제한 폐지 124

22.「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교육부고시 125
22-1 입학정원의 모집유보제 시행근거 마련 126
22-2 모집유보제 참여대학의 기준 완화 및 모집유보 입학정원의 범위 완화 127
22-3 교육대학에 대한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허용 128

23.「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교육부고시 129
23-1 결손인원을 활용한 첨단학과 운영 중 입학정원대비 결손인원 부족시 대학 자체적 보완 기회 부여 130
23-2 (비수도권) 대학원에 결손인원을 활용한 첨단산업분야 학과신설(정원증원) 허용 131
23-3 (비수도권) 비첨단산업분야의 결손인원·편입학여석 활용한 비첨단산업분야 학과신설 허용 132
23-4 (첨단산업분야 공동학과) 학교 밖 수업 장소제한 완화 및 (공동융합학과) 학교 밖 수업 허용 133

24.「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 교육부고시 134
24-1 둘 이상의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분리시 기본재산 분배 절차 마련 135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01

고등교육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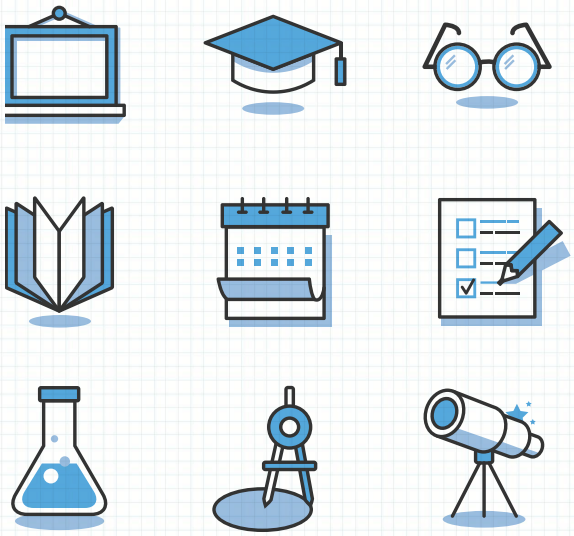

1-1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허용

분 야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

■ **주요 내용**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함께보는 규제개선 (고등교육법 시행령) 2-21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신설>	**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53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89호, 2022. 10. 18., 일부개정]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02

고등교육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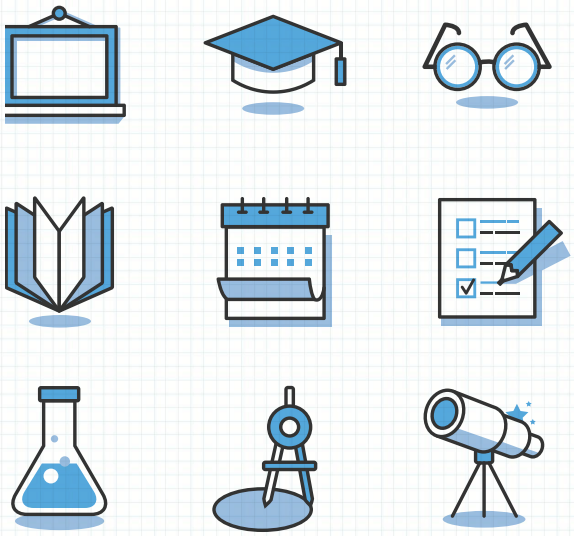

2-1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30%) 2028년까지 연장

분 야	#간호학과 #편입학

■ **주요 내용** 의료현장의 간호사 인력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30%)를 종전 2023년에서 2028년까지 5년 더 연장함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해당 호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해당 호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2. 제29조 제2항제 3호	제2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2019학년도 편입학전형부터 2023학년도 편입학전형까지는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29조 제2항제 3호	제2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2019학년도 편입학전형부터 2028학년도 편입학전형까지는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5호, 2023. 4. 18., 일부개정]

2-2 전임교원의 교수시간 자율 운영

분 야	#전임교원 #교수시간

개선내용

■ **주요 내용**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함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선 전	개선 후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일부개정]

2-3 대학의 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성 향상

분 야	#대학의 조직운영 자율화

개선내용

■ **주요 내용** 대학에서 학과 등의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전에는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선 전	개선 후
제9조(학교의 조직) ②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학교의 조직)** ② 대학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일부개정]

2-4 소단위 전공과정 운영 근거 마련

분 야	#소단위 전공과정

■ **주요 내용**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과목이 연계·융합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소단위 전공과정을 대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소단위 전공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그 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사람 등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소단위 전공과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수증서의 발급 등 소단위 전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신설〉	**제12조의2(소단위 전공과정)**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각종학교 및 대학원대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생이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단위 전공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사람 등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해당 소단위 전공과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단위 전공과정 이수증서의 발급 등 소단위 전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일부개정]

2-5 둘 이상의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 운영 허용

분 야	#교육과정 공동운영

■ **주요 내용**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하는 경우, 종전 두 대학 간 공동운영에서 둘 이상의 대학 간 공동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일부개정]

2-6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 자율화

분 야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방법·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종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선 전	개선 후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방법·학점이수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방법·학점이수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일부개정]

2-7 산업체·연구기관 등 학교 밖 기관에서 협동수업 허용

분 야	#학교 밖 수업 #이동수업 #협동수업

개선내용

■ **주요 내용**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학교에 출석하기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수업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그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으로 구분함*

* 학교 밖 수업의 종류별로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학교 밖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교육부훈령, 2024.4.18. 제정)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선 전	개선 후
〈신설〉	**제14조의2(수업 등)** ②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학교에 출석하기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수업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그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으로 구분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일부개정]

2-8 교육과정 공동운영관련 학점인정의 범위·기준의 대학 자율화

분 야	#학점인정의 범위와 기준

■ 주요 내용 대학이 다른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하거나,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학점인정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생략) 가. 해당 학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해당 학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 나. 해당 학교가 제13조의2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 전부 다. 교육부장관이 첨단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으로서 해당 학교가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인정의 범위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가. 해당 학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이내 나. 해당 학교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이내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인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 2. 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가.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인정의 범위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인정의 범위 이내 나.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인정의 범위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3. 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항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인정범위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일부개정]

2-9 예비군 훈련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 규정 명시

분 야	#예비군 훈련 #학생의 학습권 보장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예비군대원으로 훈련을 받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훈련 등의 기간 동안의 수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고 그 밖에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선 전	개선 후
〈신설〉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학교의 장은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에 있어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 2.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실시할 것 3. 그 밖에 해당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것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일부개정]

2-10 전공자율선택제의 시행 근거 마련

분 야	#전공자율선택제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주요 내용** 대학의 전공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학생이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이나 둘 이상의 학과 등이 연계·융합하는 전공 등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등) ①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3. 대학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② 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대학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일부개정]

2-11 경영등관련대학원 종류의 세부 구분 폐지

분 야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개선내용

■ **주요 내용** 경영학·금융학 및 물류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낮아짐에 따라 조문을 현실화함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선 전	개선 후
제22조의2(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① 제22조 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 중 경영학·금융학 및 물류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하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그 주된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전문대학원 : 경영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금융전문대학원 : 금융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물류전문대학원 : 물류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과목 및 연수과정 등을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45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④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이 전문학위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삭제〉
제22조의3(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교육부장관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개교일 또는 최근 인증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장으로 하여금 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국내 기관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으로부터 평가 또는 인증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삭제〉

※ 고등교육법시행령 관련 규정 삭제에 따라 세부 내용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통해 규정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행 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일부개정]

2-12 의대 등 수업연한 자율 운영

분 야	#수업연한 #의학계열 학사학위과정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의학계열 학사학위과정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에는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을 예과 2년과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 4년으로 구분해 운영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6년의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선 전	개선 후
제25조(수업연한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운영한다.	**제25조(수업연한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일부개정]

2-13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전학년 전과 가능)

분 야	#학생의 학습권 보장 #입학·편입학·전과

개선내용

■ **주요 내용** 학생이 다양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에는 대학의 장이 2학년 이상의 학생만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생의 학년 제한 없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도록 함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선 전	개선 후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③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③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일부개정]

2-14 대학의 학위논문 심사에 대한 자율성 강화

분 야	#학위논문
개선내용	

■ **주요 내용** 대학의 학위논문 심사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학위과정별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수와 자격을 학칙에 위임함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선 전	개선 후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②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이상)이 행한다.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② 학위논문의 심사는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학위과정별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수와 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일부개정]

2-15 시간제등록생의 비수도권 대학 선발인원 확대

분 야	#시간제등록생 #학생정원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시간제등록생의 비수도권 대학 선발인원을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선 전	개선 후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인원을 포함하여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인원을 포함하여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일부개정]

2-16 원격대학에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허용

분 야	#원격대학 #시간제등록생

■ **주요 내용**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격대학의 경우 종전에는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간제등록생만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도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④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④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⑧ 원격대학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의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⑧ 원격대학의 경우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 총수는 해당 대학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2. 9. 6.] [대통령령 제32895호, 2022. 9. 6., 일부개정]

2-17 시간제등록생의 학기당 수강학점 한도 확대

분 야	#시간제등록생 #수강학점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시간제등록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한도를 매학기 12학점, 연간 24학점의 범위에서 매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의 범위로 확대함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선 전	개선 후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⑨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⑨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일부개정]

2-18 산업체위탁교육의 범위를 석·박사학위과정까지 확대

분 야	#산업체위탁교육 #석·박사학위과정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산업체 위탁교육의 범위를 학사학위과정에서 석사·박사학위과정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산업체의 고급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선 전	개선 후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①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법 제33조의 입학자격을 충족하는 사람(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사람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해당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일부개정]

2-19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완화 등 대학 자율성 제고

분 야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 **주요 내용** 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전공심화과정에 입학 할 수 있는 자격 기준 중 관련분야 재직경력의 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전공심화과정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함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③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전문대학전공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③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2.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전공심화과정)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전공심화과정)**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8. 21.]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일부개정]

2-20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평가업무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위탁

분 야	#전문기술석사과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인가를 위한 평가 업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함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선 전	개선 후
〈신설〉	**제58조의6(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 등)** ⑥ 교육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를 위한 평가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8. 21.]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일부개정]

2-21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허용

분 야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

■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허용과 관련,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함

■ 함께보는 규제개선 (고등교육법) 1-1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신설>	**제62조의2(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①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의 장이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사이버대학전공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설 학과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4. 교원·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사이버대학전공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5호, 2023. 4. 18, 일부개정]

2-22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완화

분 야	#사이버대학 #입학자격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의 기준 중 관련분야 재직경력 기간의 제한을 완화함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선 전	개선 후
제62조의2(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③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이버대학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사이버대학전공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제62조의2(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③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이버대학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8. 21.]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03

국립학교 설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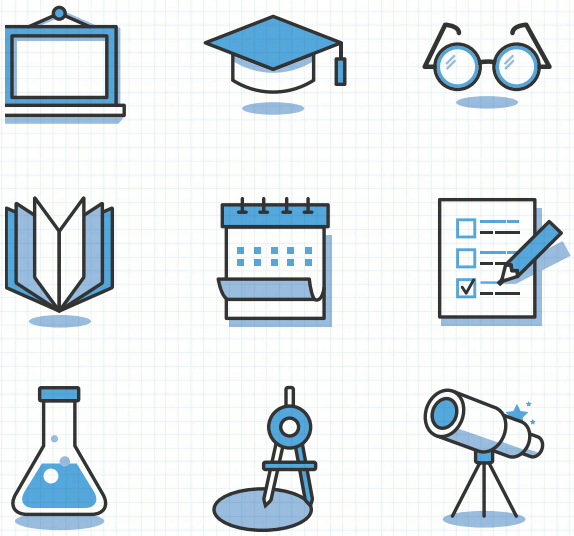

3-1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 제고

분 야	#국립대학 #대학운영 자율화 #학과·학부

■ **주요 내용**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에 학과·학부 외에도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함

■ **관련 법령** 국립학교 설치령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제6조(단과대학 등) ②대학의 단과대학(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을 말한다) 및 대학원에 학과 및 학부를, 교육대학 및 그 대학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및 학부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학과 및 학부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장은 다른 대학원의 장이나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부의 장 중에서 둘 수 있다. ④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 및 학부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을 말한다)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및 학부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⑤ 삭 제 ⑥교육대학의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총장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및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6조(단과대학 등)** ②대학의 단과대학(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을 말한다) 및 대학원에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교육대학 및 그 대학원에 학과등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등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학과등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장은 다른 대학원의 장이나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과등의 장 중에서 둘 수 있다. ④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등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을 말한다)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등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⑥교육대학의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등의 장은 총장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및 학과등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7조(시설 등) ③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또는 학부의 장 중에서 두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시설 등)** ③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대학원 또는 학과등의 장 중에서 두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②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교수 중에서 보한다. ⑦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별표 8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단과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다.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②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 ⑦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별표 8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다.
제22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②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및 학부의 설치	**제22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②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등의 설치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298호, 2024. 3. 12., 일부개정]

3-2 국립대학에 소재지 외 교육시설의 설치·운영 허용

분 야	#국립대학 #대학운영 자율화 #교육시설

개선내용

■ **주요 내용** 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국립대학의 소재지 외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함

■ **관련 법령** 국립학교 설치령

개선 전	개선 후
제7조(부속시설 등)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을, 특수학교에 필요한 실습시설을 둘 수 있다. ②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또는 학부의 장 중에서 두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시설 등)**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을, 특수학교에 필요한 실습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이 영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학교의 소재지에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 외의 지역에 본문에 따른 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둘 수 있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62호, 2023. 11. 16., 일부개정]

3-3 국립대학 간 통·폐합 절차에 관한 법령상 근거 신설

분 야	#국립대학 #통·폐합

개선내용

■ **주요 내용** 국립대학 간 통·폐합 절차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관련 법령** 국립학교 설치령

개선 전	개선 후
〈신설〉	**제21조(대학 간 통·폐합에 관한 특례)** 대학 간 통·폐합에 관하여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른다.

*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1. 18.] [대통령령 제33862호, 2023. 11. 16., 일부개정]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04

대학설립·운영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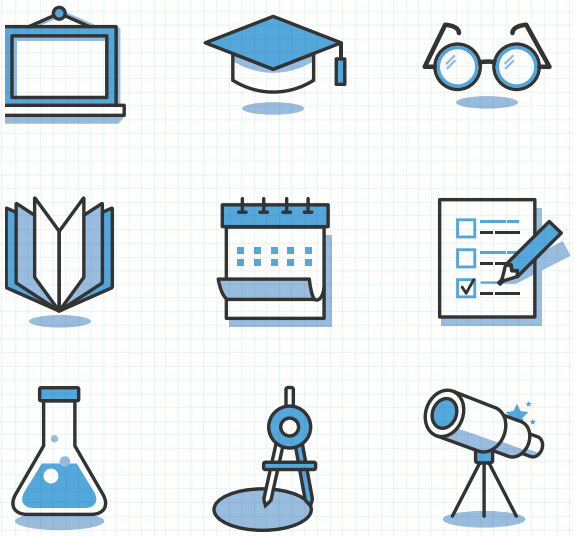

4-1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내 대학원대학 등의 설립(캠퍼스이전) 요건 완화

분 야	#산학연 클러스터

■ **주요 내용** 원칙적으로 대학의 교사와 교지는 설립자의 소유여야 하나, 대학이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원을 두는 경우에는 해당 교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 그 일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가 설립자의 소유가 아니어도 되도록 함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⑥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 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가.나. (생 략)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 호의 산업단지 〈신 설〉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⑥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현행과 같음) 2.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 · 학 · 연 클러스터
제2조의7(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①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사 및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교지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 략)	**제2조의7(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 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①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 · 학 · 연 클러스터(산 · 학 · 연 클러스터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사 및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교지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55호, 2022. 8. 9, 일부개정]

4-2 첨단산업분야 학과증설(정원증원) 및 정원 자체조정 시 교원 확보기준 완화

분 야	#첨단산업분야

■ **주요 내용** 첨단산업분야의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분야 학과·정원 등을 증설·증원하거나 자체조정하는 경우 대학이 갖춰야 하는 교원 확보 기준을 완화함

■ 함께보는 규제개선 (대학설립·운영 규정) *4-3, 4-7, 4-9, 4-10, 4-11*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② 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교원확보율은 전년도의 교원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교육부장관의 출연을 받는 사업으로 선정될 것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학자를 유치하고 별표 1의5를 충족할 것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상호조정의 기준)** ② 대학원이 인공지능 · 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대학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6조에 따른 교원 확보 기준에 따라 교원을 확보할 것 2.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④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을 신설 · 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 인공지능 · 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이나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90퍼센트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④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을 신설 · 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낮은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대학이 인공지능 · 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다음 각 호의 비율과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90퍼센트의 교원확보율 중 가장 낮은 비율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1.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 교원확보율 2.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직전 3개년도의 평균 교원확보율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55호, 2022. 8. 9, 일부개정]

4-3 학생정원 조정 및 학위과정 간 입학정원 상호조정의 유연화

분 야	#학생정원 조정 #입학정원 조정

■ **주요 내용**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정원 조정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위과정 간 입학정원의 상호조정을 유연하게 함

■ 함께보는 규제개선 (대학설립·운영 규정) *4-2, 4-11*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내용

개선 전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④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을 신설 · 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 인공지능 · 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이나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90퍼센트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별표 1의6]
상호조정의 기준(제2조의3제6항 관련)

대상	증원 기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가. 학사과정의 최근 4년간 평균 재학생 충원률이 95퍼센트 이상인 대학 나. (생략)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1.5명을 감축하여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입학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하여 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다. (생략)
3.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입학 정원을 상호조정 하는 대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 (생략) 나.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석사학위 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 하여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박사학위 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개선 후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상호조정의 기준)
④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을 신설 · 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낮은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대학이 인공지능 · 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다음 각 호의 비율과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90퍼센트의 교원확보율 중 가장 낮은 비율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1.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 교원확보율
2.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직전 3개년도의 평균 교원확보율

[별표 1의6]
상호조정의 기준(제2조의3제6항 관련)

대상	증원 기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대학 가. 학사과정의 최근 4년간 평균 재학생 충원률이 90퍼센트 이상인 대학 나. (생략)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입 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 삭제 다. (생략)
3.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입학 정원을 상호조정 하는 대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 (생략) 나.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석사학위과 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하여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55호, 2022. 8. 9, 일부개정]

4-4 단일 교지의 인정 범위 확대

분 야	#교지

개선내용

■ **주요 내용** 동일한 대학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교지 간 최단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 하나의 교지로 보고 있으나, 도심 내 지가 상승으로 근거리 교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대중교통의 발달 등으로 생활권 반경이 넓어진 현실을 반영하여 교지 간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이거나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시·군·구 내에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교지로 보도록 하여 대학의 교지 확보를 용이하게 개선함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제5조(교지) ④ 대학이 기존의 교지 밖에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학생 주거용 시설의 부지는 기존의 교지(기존의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주거용 시설과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교지)** ④ 대학의 교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교지가 도로 · 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 2. 교지경계선(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분리된 교지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 간 최단거리가 모두 20킬로미터 이하여야 한다. 3.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 · 군 · 구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 4. 대학이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기존 교지(기존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 주거용 시설과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 밖의 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된 부지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55호, 2022. 8. 9., 일부개정]

4-5 전문대학원 신설 시 전용 교사시설 및 교원 확보요건 폐지

분 야	#전문대학원 #신설요건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전문대학원 신설 시 전용 교사시설 및 교원 확보 요건을 폐지하여, 다른 학부(대학원) 소속 교원과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별표1의2] 대학원 및 그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제4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라 전용 교사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0명으로 본다.	**[별표1의2] 대학원 및 그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제4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라 교사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0명으로 본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일부개정]

4-6 박사과정 설치 시 확보 교원의 자격 요건 대학 자율 운영

분 야	#박사과정 설치 #교원 확보 요건

개선내용

■ **주요 내용**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이 갖추어야 할 연구실적 요건을 폐지하고,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개선함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④ 대학(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문·사회 계열: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4편 이상일 것 1의2. 예·체능 계열: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일 것 2.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6편 이상일 것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④ 대학(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 인원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최근 5년간 계열별 연구 관련 실적 및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3. 1.]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일부개정]

4-7 첨단산업분야 학과증설(정원증원)의 요건 완화

분 야	#첨단산업분야 #학과·정원의 증설·증원

■ **주요 내용** 대학원이 첨단산업분야의 학과·정원 등을 증설·증원하는 경우에는 교원 확보 기준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校舍)·교지·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첨단산업분야의 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두는 대학에 대해서도 대학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완화된 증설·증원 기준을 적용함

■ **함께 보는 규제개선** (대학설립·운영 규정) *4-2, 4-8, 4-9, 4-10*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상호조정의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의3에 따른 통·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2. (생략) ② 대학원이 인공지능 · 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대학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6조에 따른 교원 확보 기준에 따라 교원을 확보할 것 2.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상호조정의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학부 또는 전공(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의3에 따른 통·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2. (현행과 같음) ② 대학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대학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6조에 따른 교원 확보 기준에 따라 교원을 확보할 것.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제6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의 7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2. 제1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1. 10] [대통령령 제33218호, 2023. 1. 10, 일부개정]

4-8 대학 통·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 폐지

분 야	#대학 통·폐합 #입학정원

■ **주요 내용** 대학의 통·폐합 유형을 총 6개로 한정하고, 통·폐합 유형에 따라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했던 제한 규정을 폐지함

■ **함께 보는 규제개선** (대학설립·운영 규정) 4-7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상호조정의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학부 또는 전공(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의3에 따른 통·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상호조정의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학부 또는 전공(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서 삭제>
1. 통·폐합 후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한다) 및 교원(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확보율은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등 및 교원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삭제>
2. 제1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삭제>
[별표 1의3] 통·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	<삭제>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일부개정]

4-9 다른 국내대학과 첨단산업분야 공동교육과정 운영시 학과증설(정원증원) 요건 완화

분 야	#첨단산업분야 인력양성 #공동교육과정

■ **주요 내용** 대학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다른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대학원 교육과정 뿐 아니라 그밖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학과등 증설 또는 학생정원 증설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고, 운영 중인 대학의 경우, 특례에 따라 교원 확보 요건도 완화함

■ **함께 보는 규제개선** (대학설립·운영 규정) 4-2, 4-7, 4-10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상호조정의 기준) ② 대학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대학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6조에 따른 교원 확보 기준에 따라 교원을 확보할 것.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제6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의 7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2. (생략)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상호조정의 기준)** ② 대학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6조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교원 확보 기준에 따라 교원을 확보할 것.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제6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의 7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2.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일부개정]

4-10 국립대학 대학원의 첨단산업분야 학과증설(정원증원)관련 교원 확보요건 완화

분 야	#국립대학 #첨단산업분야

개선내용

■ **주요 내용** 국립대학이 첨단산업분야의 학과·정원 등을 증설·증원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의 충족과 함께 갖추어야 하는 교원확보의 요건을 70%로 완화함

■ **함께 보는 규제개선** (대학설립·운영 규정) 4-2, 4-7, 4-9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상호조정의 기준) ② 대학원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대학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6조에 따른 교원 확보 기준에 따라 교원을 확보할 것 <단서 신설>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상호조정의 기준)** ② 대학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대학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6조에 따른 교원 확보 기준에 따라 교원을 확보할 것.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제6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의 7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1. 10.] [대통령령 제33218호, 2023. 1. 10., 일부개정]

4-11 학과(학부)의 신설·통합 또는 학과등 입학정원 조정시 교원 확보요건 폐지

분 야	#학과등 신설·통합 #입학정원 조정 #교원비율

개선내용

■ **주요 내용**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정원 조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학과 또는 학부를 신설·통합하거나 그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자체조정하는 경우에는 교원 확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도록 요건을 완화함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상호조정의 기준) ④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낮은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대학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다음 각 호의 비율과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90퍼센트의 교원확보율 중 가장 낮은 비율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1.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 교원확보율 2.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직전 3개년도의 평균 교원확보율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상호조정의 기준)** 〈삭제〉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1. 10.] [대통령령 제33218호, 2023. 1. 10., 일부개정]

4-12 국립대학의 해기사海技士등 특정분야인력 양성관련 교원 확보비율 완화

분 야	#국립대학 #첨단산업분야 #학과등 증설·증원 #교원비율

■ **주요 내용** 국립학교가 해기사(海技士)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학생의 증설·증원하는 경우, 확보해야 하는 교원 비율을 80%에서 70%로 완화함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상호조정의 기준) ⑦「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가 해기사(海技士)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제6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의 8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 중 교원의 확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상호조정의 기준)** ⑦「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가 해기사(海技士)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분야는 제외한다)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제6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의 7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 중 교원의 확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1. 10.] [대통령령 제33218호, 2023. 1. 10., 일부개정]

4-13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의 학과 개편 및 정원 운영 자율성 제고

분 야	*#비수도권 대학원 #학과개편 #입학정원 조정*

개선내용

■ **주요 내용**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원의 학과 개편 및 정원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이 학과 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4대 교육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상호조정의 기준) 〈신설〉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상호조정의 기준)** ④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55호, 2024. 4. 30., 일부개정]

4-14 모든 대학 및 대학원에서 입학정원 상호조정 허용

분 야	#입학정원 조정

개선내용

■ **주요 내용**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정원 조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대학원대학 포함)의 교원확보율과 관계없이 상호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상호조정의 기준) ⑥ 대학(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교원확보율이 65퍼센트 미만인 대학은 제외한다)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별표 1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의 상호 조정(이하 "상호조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 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대학원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2.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3.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상호조정의 기준)** ⑥ 대학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별표 1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의 상호 조정(이하 "상호조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후단 삭제〉 1. 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대학원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2.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3.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55호, 2024. 4. 30., 일부개정]

4-1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간 입학정원 상호조정 비율 1:1 적용

분 야	#석·박사학위과정 #전문학사·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상호조정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조정하는 경우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2명을 감축(증원)하여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1명을 증원(감축)하는 비율로 조정하던 것을,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1명을 감축(증원)하여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1명을 증원(감축)하는 비율로 조정 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별표 1의6] 상호조정의 기준(제2조의3제6항 관련)

대 상	상호조정 기준
3.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조정하는 대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2명 이내에서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하여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4.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조정하는 전문대학	4.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개선 후

[별표 1의6] 상호조정의 기준(제2조의3제6항 관련)

대 상	상호조정 기준
3.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조정하는 대학	3.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증원)하여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감축)하는 비율로 조정
4.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조정하는 전문대학	4.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증원)하여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감축)하는 비율로 조정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55호, 2024. 4. 30., 일부개정]

4-16 학부-대학원 간 학생정원 상호조정 요건 폐지

분 야	#학생정원 상호조정

개선내용

■ **주요 내용** 학부와 대학원 간 학생정원 조정 시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을 폐지함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별표 1의6] 상호조정의 기준(제2조의3제6항 관련)	**[별표 1의6] 상호조정의 기준(제2조의3제6항 관련)**

개선 전

대상	증원 기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가. 학사과정의 최근 4년간 평균 재학생 충원율이 90퍼센트 이상인 대학 나.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최근 4년간 평균 등록 학생 수 이하로 감축한 대학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학사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후략)

개선 후

대상	증원 기준
1. 상호조정을 희망하는 대학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 (현행과 같음) (후략)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일부개정]

4-17 대학의 통·폐합 유형 확대

분 야	#대학 통·폐합 #사이버대학

■ **주요 내용** 대학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이 전공대학 또는 사이버대학과도 통·폐합할 수 있도록 통·폐합의 유형을 확대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함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제2조의4(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두 대학을 통·폐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산업대학은 25퍼센트 이상, 전문대학은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각각 감축하는 경우 교원 및 교사등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통·폐합 후 교사등이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산업대학의 교사등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의 합과 같거나 증가할 것 2. 통·폐합 후 교사등의 확보율이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의 확보율보다 증가할 것 3. 교원확보율이 61퍼센트 이상일 것(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제2조의4(대학의 통·폐합)** ①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통·폐합을 할 수 있다. 1. 대학 간의 통·폐합 2. 대학과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간의 통·폐합 3. 대학과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이하 "사이버대학"이라 한다) 간의 통·폐합. 이 경우 대학과 사이버대학은 통·폐합 전과 통·폐합 후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폐합을 하려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통·폐합 후 대학의 편제완성연도 학생정원이 통·폐합 전의 대학, 전공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의 편제완성연도 학생정원의 합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통·폐합 후 교사, 교원(의학계열의 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을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통·폐합 후의 대학과 동일한 종류의 학교를 기준으로 한 확보율을 말하며,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로 본다) 이상으로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 유지할 것 3. 통·폐합에 따른 학생·교직원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 ③ 그 밖에 대학의 통·폐합의 절차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일부개정]

4-18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폐지

분 야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개선내용

■ **주요 내용**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둘 필요성이 낮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근거 규정을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맞추어,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설치 시 갖추어야 하는 교원, 교사(校舍), 교지 등에 관한 특례 조문을 삭제함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제2조의5(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 ~ ⑦ (생략)	〈삭제〉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8호, 2024. 2. 20., 일부개정]

4-19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 요건 완화

분 야	#운영 중인 대학 특례 #대학설립운영4대요건 #교사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운영 중인 대학의 경우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하고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14㎡(국토교통부 공고, 「최저주거기준」 상 1인당 최소 주거면적)로 통일·완화함

* 인문·사회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은 12㎡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제4조(교사) 제3항 [별표3]
교사(교육기본시설등) 기준면적

계열별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
인문·사회	12㎡
자연과학	17㎡
공학	20㎡
예·체능	19㎡
의학	20㎡

개선 후

제4조(교사) 제3항 [별표3]
교사(교육기본시설등) 기준면적

계열별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	
	편제 미완성 대학*	운영 중인 대학
인문·사회	12㎡	12㎡
자연과학	17㎡	14㎡
공학	20㎡	
예·체능	19㎡	
의학	20㎡	

* 편제 미완성 대학 :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 연도를 경과하지 않은 대학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일부개정]

4-20 대학의 일부를 소재지 외 국내의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경우 교사 요건 폐지

분 야	#교사 #소재지 외 캠퍼스 운영

개선내용

■ **주요 내용**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는 경우 확보해야 하는 교사에 관한 요건을 폐지하고,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하여 주된 위치의 교사 기준 면적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함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제4조(교사) ⑥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확보해야 하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은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	**제4조(교사)** 〈삭제〉
〈신설〉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③ 운영 중인 대학이 그 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 해당 다른 위치의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3]의 교사기준면적을 충족하면 주된 위치의 교사에 대해서는 제4조 제3항 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른 위치의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은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일부개정]

4-21 첨단산업분야 학과등을 대학의 소재지외 운영시, 교지 요건 폐지

분 야	#첨단산업분야 #교지

개선내용

■ **주요 내용** 대학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분야의 학과 등을 대학의 소재지 외에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상 갖추어야 할 교지 요건을 폐지함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제5조(교지) ⑤ 대학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분야 학과등을 그 대학의 주된 위치와 분리된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그 다른 위치의 교지가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4의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하면 주된 위치의 교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교지)** 〈삭제〉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일부개정]

4-22 대학의 교지기준 면적 요건 완화

분 야	#운영 중인 대학 특례 #교지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하여, '교지'는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 법령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을 폐지함

※ (기존) 학생정원이 401명에서 999명인 대학은 교사기준면적에 해당하는 교지를 갖추도록 하고 특히, 1,000명 이상일 경우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을 갖추도록 함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제5조(교지) 제1항 [별표4]

교지기준면적(제5조제1항관련)

(단위 : ㎡)

학생정원	400명 이하	400명 초과~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면적	교사건축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비 고

1.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건축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건축면적을 말한다.

<신설>

개선 후

제5조(교지) 제1항 [별표4]

교지기준면적(제5조제1항관련)

(단위 : ㎡)

학생정원	400명 이하	400명 초과~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면적	교사건축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 2배 이상

비 고

1.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건축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건축면적을 말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교지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일부개정]

4-23 전문대학원 신설 시 교원 확보율 산정 기준 완화

분 야	#교원 #전문대학원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경우 교원 확보 기준을 일반대학원 수준으로 완화(학부 정원의 2배→1.5배로 산출)함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제6조(교원) ①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수를 말한다. 1. (생 략)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수 3. 대학원대학 :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의 학생수	**제6조(교원)** ①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수를 말한다. 1. (생 략)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를 합한 학생수 3. 대학원대학 :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의 학생수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일부개정]

4-24 수익용기본재산 충족 기준 완화

분 야	#학교회계 #수익용기본재산 #운영 중인 대학 특례

■ **주요 내용** 확보 기준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서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으로 완화하고,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하여 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가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과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⑦ 운영 중인 대학(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법인이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해당 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일부개정]

4-25 교사 확보율 100% 초과 시, 교사·교지 임차 허용

분 야	#운영 중인 대학 특례 #교사 #교지

개선내용

■ **주요 내용** 교지·교사는 대학 설립 주체가 소유함이 원칙이나,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는 운영 중인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할 경우, 교지·교사를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단, 대학의 교지경계선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20km 이하이고, 대학의 교지와 동일 시/군/구 내에 있으며, 지상권, 전세권 또는 등기되는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요건 충족 필요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신설〉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①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하며, 이하 "운영 중인 대학"이라 한다)은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조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 이상의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만 임차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등기되는 임차권을 설정했을 것. 이 경우 전세권 또는 임차권은 5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2.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대학의 교지경계선(제5조제4항에 따라 교지가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하며, 교지가 분리된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일 것 나. 해당 대학의 교지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 군, 구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일부개정]

4-26 초과 유휴교사에 대한 임대 허용

분 야	#운영 중인 대학 특례 #교사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운영 중인 대학이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초과하여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 교사 중 유휴교사를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임대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신설〉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② 운영 중인 대학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초과하여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 교사 중 유휴교사를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하려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설일 것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일 것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일부개정]

4-27 캠퍼스 위치 변경 시 충족 필요 요건 완화

분 야	*#운영 중인 대학 특례 #신규 캠퍼스 조성*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운영 중인 대학이 신규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캠퍼스의 학생정원에 따른 교사시설 및 여건을 맞추면 운영이 가능함

※ 종전에는 대학이 기존 캠퍼스와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 모두 교지와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갖춰야만 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 여건(교사 기준 면적 등)만 갖추면 이전 가능함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신설〉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③ 운영 중인 대학이 그 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 해당 다른 위치의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3의 교사기준면적을 충족하면 주된 위치의 교사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 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른 위치의 교육기본시설 등의 면적은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일부개정]

4-28 주야간 학생 정원 조정 시 충족 필요 요건 완화

분 야	#운영 중인 대학 #주야간 학생정원 조정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하여, 주야간 정원 전환 시 전년도 이상의 교사 확보율 유지 또는 100% 이상 유지 시 정원 조정이 가능함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신설〉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④ 운영 중인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편제완성 연도까지는 학생정원 조정 직전 학년도의 교사확보율(교사확보율이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상으로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을 확보하면 제4조제3항 전단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주간과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조정 후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이 조정 전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보다 큰 경우만 해당하며,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과 교사확보율은 각각 제4조제4항에 따라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생략)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일부개정]

4-29 캠퍼스 간 정원 이동 시 충족 필요 요건 완화

분 야	#캠퍼스 간 정원이동

개선내용

■ **주요 내용** 학생정원이 증가되는 캠퍼스는 교사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 또는 100% 이상 충족하면 정원 이동이 가능함

※ 종전에는 대학이 캠퍼스 간 학생정원을 이동할 때 정원이 늘어나는 캠퍼스*에 교지·교사를 100% 이상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교사 확보율만 100% 충족하거나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이동을 할 수 있음

* 다만, 수도권 지역의 캠퍼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정원 증원 제한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신설〉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④ 운영 중인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편제완성 연도까지는 학생정원 조정 직전 학년도의 교사확보율(교사확보율이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상으로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을 확보하면 제4조제3항 전단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생략) 2.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으로서 교지 간에 학생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조정 후 학생정원이 증가하는 교지의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과 교사확보율을 각각 산정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일부개정]

4-30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 확대

분 야	#운영 중인 대학 특례 #교원

개선내용

■ **주요 내용** 교원 규모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므로 계열별'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은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하여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1/5에서 1/3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산업계 등의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 (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 20명, (의학) 8명

** (기존) 일반대는 1/5, 대학원대학(전문대학원)은 1/3, 산업대·전문대는 1/2까지 활용 가능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신설〉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⑤ 운영 중인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은 제6조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등을 둘 수 있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일부개정]

4-31 재학생수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

분 야	#운영 중인 대학 특례 #교사 #교원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하여, '재학생 수'가 학생정원보다 적은 경우 정원 대신 '재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부담을 완화함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신설〉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⑥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교사 기준 또는 제6조에 따른 교원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매년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의 기준일 현재 재학생 수가 학생정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학생 수를 적용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일부개정]

4-32 둘 이상의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학교급별 법인 분리 허용

분 야	#운영 중인 대학 특례 #학교법인의 분리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운영 중인 대학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급별(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이에 따라, 법인을 분리할 경우 기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가액을 학교별 재학생 수에 따라 나눌 수 있음

※세부내용 : 「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신설〉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⑧ 운영 중인 대학의 학교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당초 학교법인의 학교 중 일부 학교를 새로 설립한 학교법인에 두는 경우 당초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새로 설립한 학교법인에 배분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2. 1개 이상의 대학과 1개 이상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일부개정]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05

사립학교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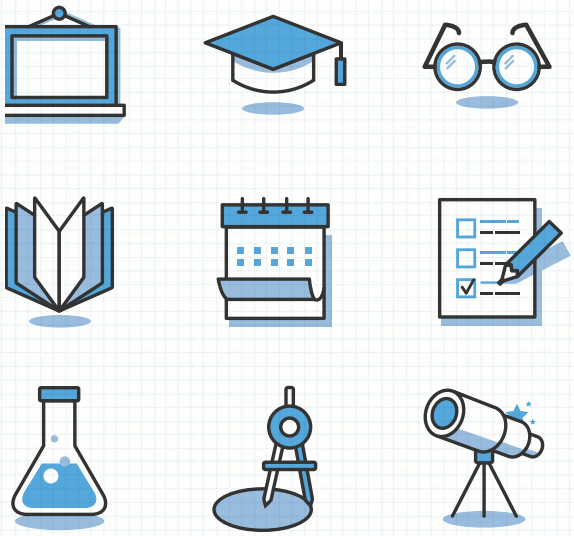

5-1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매도·증여·교환등) 규제 완화

분 야	#사립학교 #기본재산

개선내용

■ **주요 내용**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①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해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을 대학·산업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서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까지 확대하고, ② 기본재산의 매도 등의 경우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을 대학·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서 사이버대학·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까지 확대하며, 그 매도 등 가액도 종전의 3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함

■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선 전	개선 후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⑤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2. (생 략)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5천만원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미만)인 경우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⑤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5억원 미만)인 경우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27호, 2023. 6. 13., 일부개정]

5-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차입·융자) 규제 완화

분 야	#사립학교 #기본재산

개선내용

■ **주요 내용**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① 학교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차입 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을 대학·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서 사이버대학·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까지 확대하고, 그 기준도 종전의 차입비율 20퍼센트 미만에서 30퍼센트 미만으로 상향하고, ② 학교법인이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 앞으로는 총 차입금 규모의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선 전	개선 후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⑤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이하 이 항에서 "교비회계 등"이라 한다)의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운용되는 기본적자산의 가액을 말한다)에 대한 총 차입금(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차입비율"이라 한다)이 각 20퍼센트 미만이고 교비회계 등의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차입비율 각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5.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한국사학 진흥재단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⑤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이하 이 항에서 "교비회계등"이라 한다)의 회계별로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운용되는 기본적자산의 가액을 말한다)에 대한 총 차입금(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차입비율"이라 한다)이 각각 30퍼센트 미만인 범위에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5.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27호, 2023. 6. 13., 일부개정]

5-3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의무부담·권리포기) 규제 완화

분 야	#사립학교 #기본재산

개선내용

■ **주요 내용**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을 대학·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서 사이버대학·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까지 확대하고, 그 부담 등 가액도 종전의 3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함

■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선 전	개선 후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⑤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천만원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 미만. 다만, 의무부담의 경우에는 그 총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⑤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의무의 부담가액은 해당 부담가액을 포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1) 교비회계등의 의무의 부담가액 총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 2) 교비회계등의 회계별 차입비율이 각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목 외의 학교법인: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27호, 2023. 6. 13., 일부개정]

5-4 학교법인의 재산 중 처분할 수 있는 재산 범위의 확대

분 야	#사립학교 #기본재산

개선내용

■ **주요 내용**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이전하는 등의 경우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을 교지, 교사, 체육장에서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선 전	개선 후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에서 제외한다. 1.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2.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려는 경우로서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3.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4.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신설〉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2.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 간 통폐합(본교와 분교 간 통폐합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로서 통폐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3.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재산 4.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재산 5. 그 밖에 학생 수의 감소 등 교육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27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06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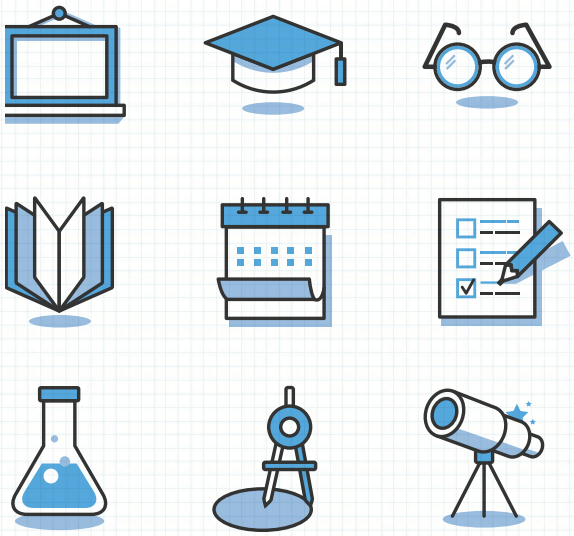

6-1 사이버대학의 교원 확보기준 완화

분 야	#사이버대학

■ **주요 내용** 원격교육에 대한 수요 확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사이버대학 교수인력 구성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이버대학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교원의 수를 산정할 때 학기당 6학점 이상을 담당하는 겸임교원 외에 학기당 6학점 이상을 담당하는 초빙교원도 포함해서 산정할 수 있도록 교원 확보 기준을 완화함

■ **관련 법령**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제2조(설립인가)①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를 대학을 개교하고자 하는 학년도(이하 "개교 예정 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 · 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6조제4항 후단에 따른 겸임교원의 확보계획	**제2조(설립인가)**①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를 대학을 개교하고자 하는 학년도(이하 "개교 예정 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확보계획 가.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 · 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특수대학원) ① 사이버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해당 사이버대학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수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를 그 특수대학원 개원 예정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교원 및 제6조제4항 후단에 따른 겸임교원의 현황 및 확보계획 5. ~ 9. (생 략)	**제3조(특수대학원)** ① 사이버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해당 사이버대학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수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를 그 특수대학원 개원 예정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계획 가. 교원 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 9. (현행과 같음)
제6조(조직 및 교원 등) ① ~ ③ (생 략) ④ 사이버대학에는 겸임교원, 명예교수 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학기당 6학점 이상을 담당하는 겸임교원은 제2항에 따른 교원 수에 포함하되, 전체 교원의 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6조(조직 및 교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겸임교원 또는 같은 조 제3호 후단에 따른 초빙교원으로서 학기당 6학점 이상을 담당하는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의 수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수를 합산한 수는 전체 교원 수의 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2. 10. 18.] [대통령령 제32955호, 2022. 10. 18., 일부개정]

6-2 사이버대학의 명칭 자유화

분 야	#사이버대학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사이버대학의 명칭에 '사이버', '디지털' 등 특정단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함

■ **관련 법령**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제2조(설립인가) ② 사이버대학의 명칭은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하되, "사이버", "디지털" 또는 "가상" 등 사이버대학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조(설립인가)** 〈삭 제〉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2. 10. 18] [대통령령 제32955호, 2022. 10. 18, 일부개정]

6-3 사이버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 확대

분 야	#사이버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 **주요 내용** 사이버대학의 장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등을 확보하고 해당 대학원의 명칭, 설치 목적, 위치 등을 기재한 설치인가신청서를 해당 대학원 개원 예정일 8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관련 법령**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제3조(특수대학원) ① 사이버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해당 사이버대학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수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를 그 특수대학원 개원 예정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대학원의 명칭, 설치 목적, 위치 및 학칙 2. 교육 및 연구용 시설·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3.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계획 가. 교원 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특수대학원이 설치될 사이버대학의 과거 2년간의 재무제표 6. 특수대학원의 개원 후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특수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8. 특수대학원의 학생정원 및 학생선발계획 9. 특수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수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결과와 해당 사이버대학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특수대학원의 설치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① 사이버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대학원(이하 "일반대학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이하 "전문대학원"이라 한다)에 학위과정의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이나 전공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려는 사이버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8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대학원의 명칭, 설치 목적, 위치 및 학칙 2. 교육 및 연구용 시설·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3.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계획 가. 교원 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제6조제4항 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대학원이 설치될 사이버대학의 과거 2년간의 재무제표 6. 해당 대학원의 개원 후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해당 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8. 해당 대학원의 학생정원 및 학생선발계획 9.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일반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결과와 해당 사이버대학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대학원의 설치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4개월 전까지 설치인가를 신청한 사이버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7호, 2024. 5. 21, 일부개정]

6-4 사이버대학에 두는 특수대학원의 신설에 관한 인가제도 폐지

분 야	#사이버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사이버대학에 특수대학원을 신설할 경우 종전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등을 확보하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이버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수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법령**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신설〉	**제4조(특수대학원)** 사이버대학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에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1]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12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석사과정 학과등 또는 전공 신설 특수대학원: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7호, 2024. 5. 21, 일부개정]

6-5 사이버대학의 학과등에 조교 확보의무 폐지

분 야	#사이버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사이버대학의 학과등에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조교의 인원에 관한 사항을 폐지함

■ **관련 법령**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제6조(조직 및 교원 등) ⑤ 사이버대학에는 교육·연구의 지원 및 보조, 학사사무의 보조를 위한 조교를 학과 또는 학부 등에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교원 등)** 〈삭제〉
⑥ 조교의 총수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학생수를 200으로 나눈 몫(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삭제〉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7호, 2024. 5. 21, 일부개정]

6-6 사이버대학을 둔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 완화

분 야	#사이버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 **주요 내용** 사이버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해당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봄

■ **관련 법령**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수익용기본재산은 35억원(전문학사학위를 주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2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이버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수익용기본재산은 35억원(전문학사학위를 주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2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확보한 수익용기본재산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확보한 수익용기본재산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별표 2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별표 3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에 따른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범위는 별표 3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신 설>	⑤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사이버대학의 학교법인이 사이버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해당 사이버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7호, 2024. 5. 21, 일부개정]

6-7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의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허용

분 야	#사이버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사이버대학의 장이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및 절차를 신설함

■ **관련 법령**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신설〉	**제12조의2(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신청 등)** ① 특수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의 장이 그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인가를 받으려는 사이버대학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8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종전의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4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려는 사이버대학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대학원의 명칭, 설치 목적, 위치 및 학칙 2. 교육 및 연구용 시설·설비의 현황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계획 가. 교원 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해당 대학원의 학생정원 5.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결과와 해당 사이버대학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전환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4개월 전까지(제3항에 따른 일반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를 받아 전환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45일 전까지로 한다) 전환인가를 신청한 사이버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7호, 2024. 5. 21, 일부개정]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0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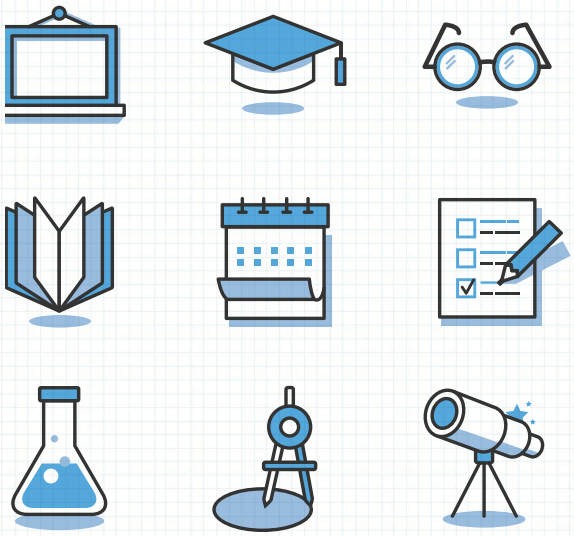

7-1 동일한 계약학과 내에서 둘 이상의 산업체 등을 선택하여 지원 허용

분 야	#계약학과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산업교육기관이 둘 이상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이 둘 이상의 산업체 등을 선택하여 계약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계약학과등이 둘 이상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른 경우 현재는 학생이 하나의 산업체 등을 선택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계약학과 내에서 둘 이상의 산업체 등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관련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 전	개선 후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④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학생 선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입학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④ 계약학과등의 학생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입학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둘 이상의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동일한 계약학과등 내에서 산업체등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모집단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시모집은 제외한다)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42호, 2023. 3. 28., 일부개정]

7-2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분야의 계약학과등의 학생정원 제한 완화

분 야	#계약학과

■ **주요 내용** 계약학과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과 관련 산업교육기관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분야의 계약학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50으로 허용함

■ **관련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⑤ 계약학과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⑤ 계약학과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산업교육기관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분야의 계약학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42호, 2023. 3. 28., 일부개정]

7-3 산업체등이 부담하는 계약학과등의 운영경비 부담 완화

분 야	#계약학과

개선내용

■ **주요 내용**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 설치·운영하는 첨단산업분야의 계약학과에 대하여 산업체 등이 부담하는 금액을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50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이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이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함

■ **관련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 전	개선 후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⑦~⑧(생략)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산업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으로 한정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분야의 계약학과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을 말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부담금을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는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은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42호, 2023. 3. 28., 일부개정]

7-4 불가피한 사유 시 계약학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허용

분 야	#계약학과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산업체등의 고용환경 및 채용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고, 계약학과등의 개편, 학생 정원 증감이 수반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을 허용함

■ **관련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 전	개선 후
〈신설〉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⑪ 산업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으로 한정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업체등의 고용환경 및 채용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개편, 학생 정원 증감이 수반되는 경우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42호, 2023. 3. 28., 일부개정]

7-5 학과·학부의 학생정원을 활용한 첨단산업분야 학과·학부의 신설 허용

분 야	#계약학과

개선내용

■ **주요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산업교육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 중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한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 전	개선 후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 2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등 설치·운영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려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계약정원의 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학과·학부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 중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한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하 "계약정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정원은 우선 활용하려는 학과·학부의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42호, 2023. 3. 28., 일부개정]

7-6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확대

분 야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신기술·신산업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경직적인 규제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에 해당 산업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교육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관련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 전	개선 후
제44조(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44조(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해당 산업교육기관 나. 가목 외의 산업교육기관 다. 연구기관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42호, 2023. 3. 28., 일부개정]

7-7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범위 확대

분 야	#산학합력 #기술지주회사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에 대한 사용범위를 종전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로 확대함

■ **관련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 전	개선 후
제46조(이익배당 사용업무) ① 법 제36조의6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그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 1. 연구시설과 기자재의 구입, 운영, 유지·보수 업무 2. 연구개발 기획 업무 3.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와 보상에 관한 업무	**제46조(이익배당 사용업무)** 법 제36조의6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그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 1. 연구시설과 기자재의 구입, 운영, 유지·보수 업무 2. 연구개발 업무 3.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와 보상에 관한 업무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42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08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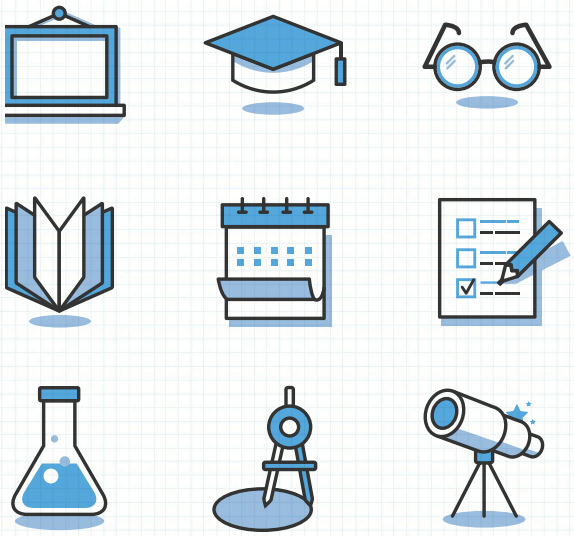

8-1 학생정원별 교사기준면적 산정방식의 유연화

분 야	#교사기준면적 산정방식

■ **주요 내용** 운영 중인 대학이 위치변경을 하려는 경우, 학생정원의 규모에 따른 교사기준면적의 산정방식을 보다 유연화하기 위하여, 학생정원 400명 미만인 경우의 산정방식을 신설함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개선 전	개선 후
〈신설〉	**제8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③ 영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 그 총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하여 교사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 $\text{계열별 환산정원} = (400\text{명} - \text{총정원}) \times \frac{\text{계열별 학생정원}}{\text{총정원}} + \text{계열별 학생정원}$ 2. 총정원이 200명 미만인 경우 $\text{계열별 환산정원} = (400\text{명} - \text{총정원}) \times \frac{\text{계열별 학생정원}}{\text{총정원}} + \text{계열별 학생정원}$

개선내용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3. 21] [교육부령 제324호, 2024. 3. 21, 일부개정]

8-2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산정방식 개선

분 야	#학교회계

개선내용

■ **주요 내용**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을 해당 학년도의 직전 학년도 학교회계를 기준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정함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개선 전	개선 후
제10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수익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에 따른 운영수익총계에서 전입금수입, 기부금수입 및 국고보조금을 뺀 것을 그 범위로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은 해당 학년도의 직전 학년도에 발생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학재정운영계획상 편제완성연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금액 2.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른 금액에 그 증설 또는 증원에 따라 증가하는 학교회계 운영수익을 합한 금액 〈신설〉	**제10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①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에 따른 운영수익 총계에서 전입금수입, 기부금수입 및 국고보조금을 뺀 것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범위는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에 따른 등록금수입 및 수강료수입으로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해당 학년도의 직전 학년도 학교회계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학재정운영계획상 편제완성연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 2. 대학의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에 그 증설 또는 증원에 따라 증가하는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을 합한 금액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3. 21] [교육부령 제324호, 2024. 3. 21, 일부개정]

8-3 유휴교사를 편익시설로 임대 허용

분 야	#교사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운영 중인 대학이 교사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확보한 교사 중 유휴교사에 대해 임대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편익시설로 정함

■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개선 전	개선 후
〈신설〉	**제14조(교사의 임대)**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 편익시설을 말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3. 21] [교육부령 제324호, 2024. 3. 21, 일부개정]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09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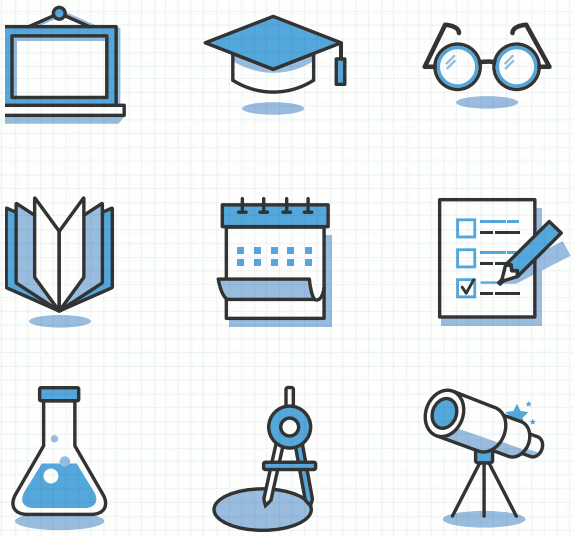

9-1 사학기관의 예·결산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 등 개선

분 야	#사학기관 #재무·회계

■ **주요 내용** 사학기관의 예·결산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학기관의 운영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회계 처리 기준을 현행화하는 한편, 현장에서 통용되는 회계 용어가 반영되도록 규정을 정비함

■ **관련 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해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5일 전까지 학교전출금 등 학교회계에 관계되는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학교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삭제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학교전출금 등 학교회계에 관계되는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학교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을 심의·확정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2조(결산서의 작성·제출 등)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50일이내에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42조(결산서의 작성·제출 등)**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심의·확정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6. 1.] [교육부령 제303호, 2023. 5. 31., 일부개정]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10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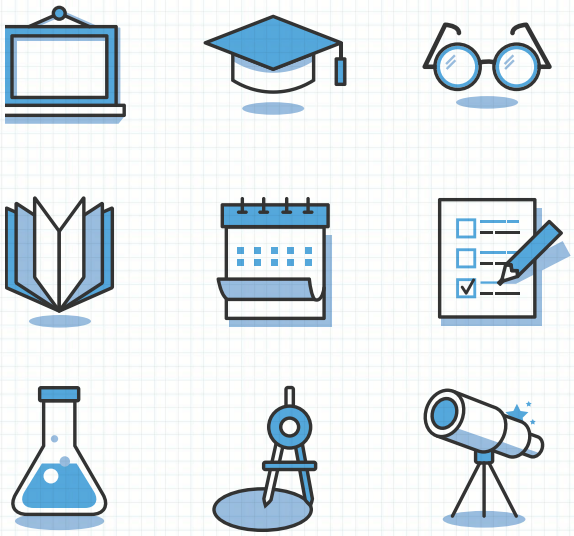

10-1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의 운영 범위를 확대

분 야	#온라인 학위과정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의 운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함

① 온라인 학사학위과정 운영 범위를 첨단산업분야에서 국내대학 단독, 국내대학 간 공동 운영이 가능토록 확대(제5조제2호 신설)

②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대상을 명확화(제5조제1호 개정)

■ **함께 보는 규제개선**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10-2*

■ **관련 법령**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선 전	개선 후
제5조(온라인 학위 과정 운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온라인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학사학위과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2. 석사학위과정 : 국내대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제5조(온라인 학위 과정 운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온라인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학사학위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2.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별표1]에 따른 첨단(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사학위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 국내대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3. 석사학위과정 : 국내대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2. 9. 29.] [교육부훈령 제415호, 2022. 9. 29., 일부개정]

10-2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자율화(사전승인·분야제한 폐지등)

분 야	#온라인 학위과정 #원격수업

■ **주요 내용** 대학이 학습자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위과정 및 원격수업 관련 규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① 기존 온라인 학위과정의 별도 구분 정의, 사전승인 및 분야제한을 폐지하여 일반 학위과정에서 원격수업을 전부 또는 일부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조)

② 원격수업 교과목의 강의평가 실시 및 공개 관련 규제 폐지(안 제6조 삭제)

■ **함께 보는 규제개선**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10-1*

■ **관련 법령**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제5조(온라인 학위 과정 운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온라인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학사학위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2.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별표1]에 따른 첨단(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사학위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 국내대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3. 석사학위과정 : 국내대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제5조(학위과정에서의 원격수업 운영 범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가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강의 평가) 대학등의 장은 원격수업 교과목에 대한 학생 강의 평가를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삭 제〉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12. 5.] [교육부훈령 제463호, 2023. 12. 5., 일부개정]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11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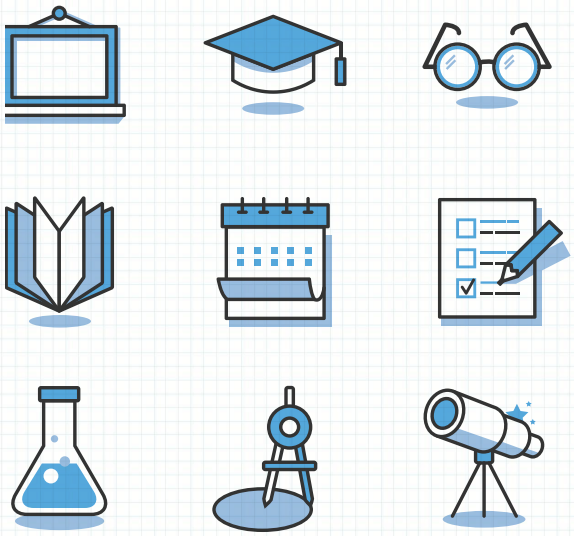

11-1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절차 등 간소화

분 야	#외국대학 박사학위 신고절차

■ **주요 내용**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합리성을 제고함

■ **관련 법령**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제2조(신고대상)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자 2. 외국인으로서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한민국에 귀화한 자	**제2조** 〈삭제〉
제3조(신고기간) ①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은 학위를 받고 귀국한 날(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제4조(신고방법) 신고는 본인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리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신고방법)** 외국박사학위의 신고는 한국연구재단이 구축·운영하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서류)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연구재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의한 신고서 1부 2. 학위증 사본(원본제시) 1부 3. 학위논문 또는 동 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 4.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제5조(신고서류)**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위논문 : 박사학위논문 또는 동 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2. 학위증명서 :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 증명서,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등 학위취득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학교(학교장 또는 그밖의 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자) 명의의 서류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1. 1.] [교육부훈령 제421호, 2023. 1. 1., 일부개정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12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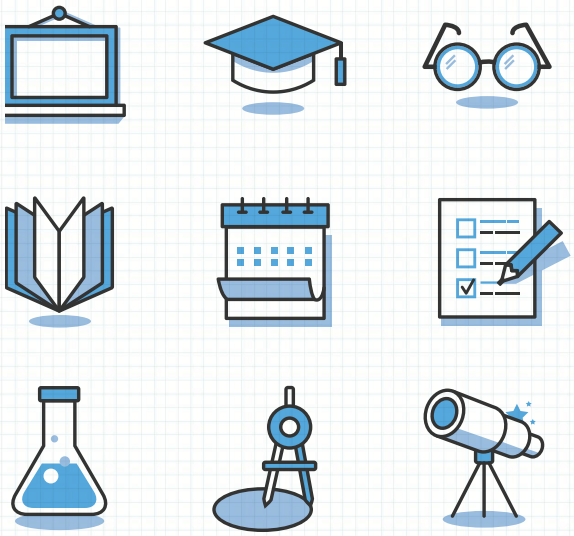

12-1 학교 밖 수업 운영 근거 마련 및 이동수업에 대한 교육부의 사전승인제 폐지

분야	#학교 밖 수업 #이동수업 #협동수업
개선내용	■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 밖 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을 제정함 **가. 학교 밖 수업의 종류 및 정의 구체화(제2조)**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원격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적용하도록 정의함 - 학교 소재지로 통학하기 곤란한 학생을 위해 학교 밖 장소에서 수업을 실시하는 이동수업의 취지에 맞게 대상 학생을 구체화하고 신설된 협동수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함 **나. 적용 범위 구체화(제3조)** -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과 별개로 별도의 법령에 따라 학교 밖의 장소에서 수업을 하거나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부속병원 등 시설을 교사로 활용하도록 정한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계열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다. 운영원칙 규정(제4조)** - 학교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교 밖 수업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학생 모집을 위한 상설학습장 운영과 같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목적 외 운영 금지 원칙을 규정함 **라. 협동수업의 취득학점의 범위 규정(제5조)** - 협동수업 도입에 따라 학생 모집 등을 위한 상설학습장 운영 등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의 의견수렴을 거쳐 취득학점의 범위를 정함 **마. 학칙 등 규정사항(제6조)** -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학교 밖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칙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바. 학교밖수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심의사항(제7조)** - 학교 밖 수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내 학교밖수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중요사항을 정함 **사. 이동수업에 대한 교육부의 사전승인제 폐지**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4. 18.] [교육부훈령 제483호, 2024. 4. 18., 제정]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13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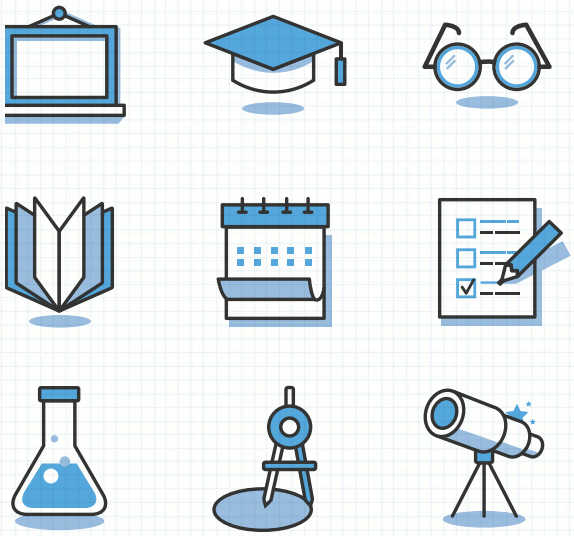

13-1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계획의 사후 변경 허용

분 야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개선내용

■ **주요 내용** 대학의 장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해 위탁교육 실시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하나 실시 계획 보고 후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입학 전형 관련 사항 외에는 다음 해 2월말까지 변경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 **관련 법령**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개선 전	개선 후
13. 위탁교육 실시보고 가. 대학의 장이 동 지침에 의거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11월말까지 익년도의 위탁교육 실시계획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함 ※ 동 보고사항에는 당해 대학의 모집단위별 위탁교육생의 선발인원, 지원자격, 선발기준, 전형일정, 전형방법, 시설 및 교원활용계획, 위탁교육생에 대한 학사관리 등 당해 대학의 위탁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나.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위탁교육 실시계획 보고에 대하여 교육부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교육정책 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위탁업체 위탁교육 실시계획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을 요구받은 대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다. 대학의 장은 당해연도 위탁교육 실시결과를 지정된 서식에 의거 다음해 3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제8조(위탁교육 실시보고)** ① 대학의 장이 이 지침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11월말일까지 다음 해의 위탁교육 실시계획(모집단위별 선발인원, 지원자격, 전형일정, 전형방법, 학사관리 등 위탁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교육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보고 후에 입학 전형 관련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위탁교육 실시계획 중 교육부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교육정책 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위탁교육 실시계획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을 요구받은 대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해당 연도 위탁교육 실시결과를 지정된 서식에 따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1. 1.] [교육부예규 제84호, 2024. 1. 1., 일부개정]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14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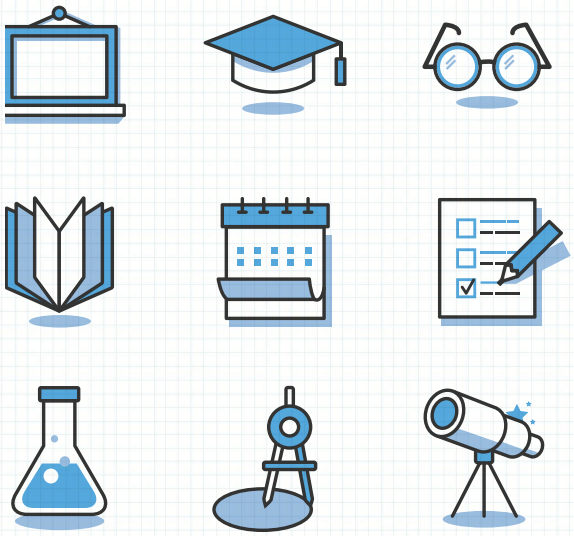

14-1 첨단산업분야의 계약학과 설치권역을 전국으로 확대

분 야	#계약학과

개선내용

■ **주요 내용**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산업분야의 계약학과 설치권역을 기존 각 시·도 단위 또는 직선거리 50km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외에 계약학과 설치권역을 대학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비수도권 소재 대학은 전국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은 수도권 전체로 확대함

■ **관련 법령**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전부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권역"이란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이 법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 : 소속 직원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은 지리적으로 소속된 광역 행정구역(도 단위) 내 또는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 이내(직선거리 기준)인 경우로 보며, 그 외 지역은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가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분야의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5. 22.] [교육부고시 제2023-17호, 2023. 5. 22., 전부개정]

14-2 이동수업 운영관련 대학의 자율적 운영 허용(교육부 사전심의 폐지)

분 야	#계약학과 #이동수업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이동수업을 교육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자율 운영으로 허용하고, 원격수업도 졸업학점의 50%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 고등교육 및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계약학과의 규제를 개선함

■ **관련 법령**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선 전	개선 후
〈전부개정〉	**제19조(원격수업)** 산업교육기관은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졸업학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세부사항은「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단, 사이버(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전부개정〉	**제20조(이동수업)** ①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와 제12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동수업을 하고자 하는 산업교육기관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5. 22.] [교육부고시 제2023-17호, 2023. 5. 22., 전부개정]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15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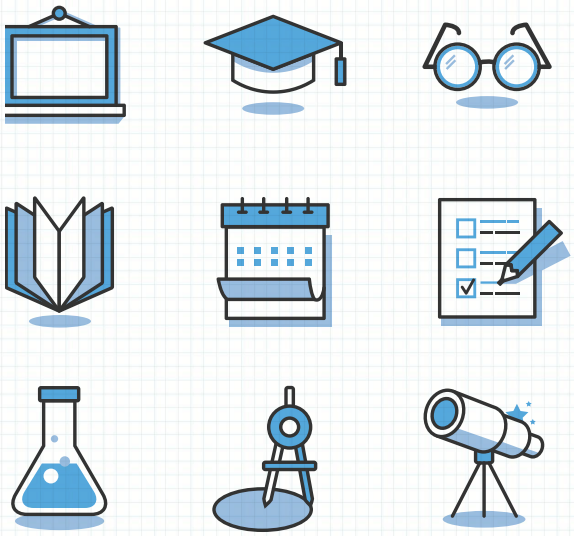

15-1 통·폐합 시 대학의 조직 개편 기준 유연화

분 야	#국립대학 #통·폐합 #대학조직의 유연화

■ 주요 내용 통·폐합 시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학사·행정조직을 개편하되, 대학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기준을 유연화함

■ 관련 법령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제4조(통합대학의 행정조직) ① 통합대학에 두는 처·실·국, 과(담당관), 행정실 수는 통합 전 양교의 총량 내에서 조정하여야 하며 초과하여 증설할 수 없다. ② 통합대학은 통합으로 인해 본교가 아니게 된 캠퍼스에 부총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통합대학의 총장은 통합으로 인해 총장직을 상실하는 자를 부총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통합대학의 부총장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종전 총장직의 잔여 임기 등을 고려하여 통합대학의 총장이 정할 수 있다. ④ 연합대학은 개별 대학의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제4조(통합대학의 행정조직 개편)** ① 통합을 하려는 대학은 대학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통합대학에 두는 처·실·본부·단, 과·담당관, 행정실 등 행정조직의 수가 통합하는 각 대학 내 행정조직 수의 총량에 비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합대학은 통합으로 인해 본교가 아니게 된 캠퍼스에 부총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통합대학의 총장은 통합으로 인해 총장직을 상실하는 자를 부총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통합대학의 부총장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통합으로 인해 총장직을 상실하는 자의 잔여 임기 등을 고려하여 통합대학의 총장이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제5조(통합대학의 학사조직) ① 통·폐합을 하려는 대학은 캠퍼스별 특성화를 위해 유사·중복되는 단과대학은 원칙적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② 통·폐합을 하려는 대학은 특성화 분야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과대학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통합 전 대학 내 단과대학을 조정하여 신설할 수 있다. ③ 통·폐합을 하려는 대학 간 유사·중복 학과·학부는 원칙적으로 모두 통·폐합하여야 한다. ④ 통·폐합을 하려는 대학은 학과·학부는 원칙적으로 신설할 수 없다. 다만, 대학의 특성화 영역과 일치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학과·학부는 신설할 수 있다.	**제5조(통합대학의 학사조직 개편)** ① 통합을 하려는 대학은 캠퍼스별 특성화와 대학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통합대학의 단과대학 및 학과·학부 등(이하 이 조에서 "학과 등"이라 한다) 학사조직을 유사·중복 학과 등 통·폐합, 다른 학과 등 간의 통·폐합 및 융합체계로의 개편, 학과 등 체계 폐지 등의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합대학은 학과 등을 신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설할 수 있다. 1. 특성화 분야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과 등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로서, 통합 전 각 대학 내 학과 등을 조정하여 신설하는 경우 2. 대학의 특성화 영역과 일치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분야의 학과 등인 경우 ③ <삭제> ④ <삭제>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3. 14.] [교육부고시 제2024-5호, 2024. 3. 14., 일부개정]

15-2 국립-공립대학 간 통·폐합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근거 마련

분 야	#국립대학 #공립대학 #통·폐합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지방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공립대학 간 통·폐합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최근의 상황 등을 반영하여 국립대학과 공립대학 간 통·폐합 시 국립대학 간 통·폐합 시와 같은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 **관련 법령**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개선 전	개선 후
〈신설〉	**제9조(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폐합)**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이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대학과 국립대학으로 통·폐합하려는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국립대학 통·폐합 절차와 기준을 적용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3. 14.] [교육부고시 제2024-5호, 2024. 3. 14., 일부개정]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16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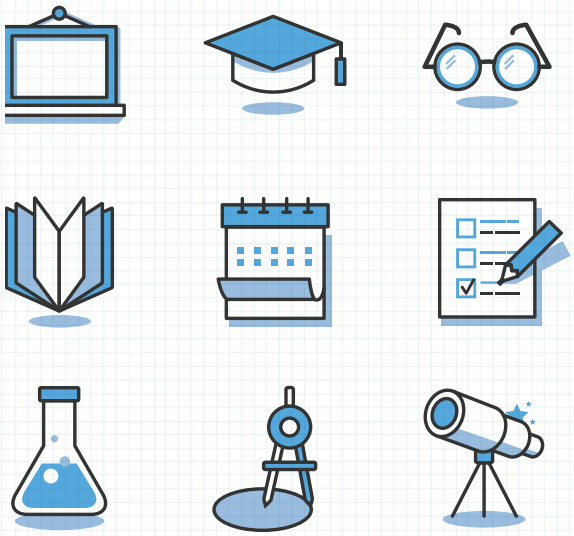

16-1 국외분교 설립 시 교육부장관의 컨설팅 관련 조항 폐지

분 야	#국외분교 설립

개선내용

■ **주요 내용** 국외분교 설립 시 교육부장관의 컨설팅 관련 규정은 대학이 국외 교사시설을 취득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할 수 있음. 그러나 컨설팅 시 자료제출 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행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법제처 지적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함

■ **관련 법령**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선 전	개선 후
제11조(컨설팅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외 교사시설을 취득 할 경우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컨설팅 및 성과관리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삭제〉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12. 19.] [교육부고시 제2023-41호, 2023. 12. 19., 일부개정]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17

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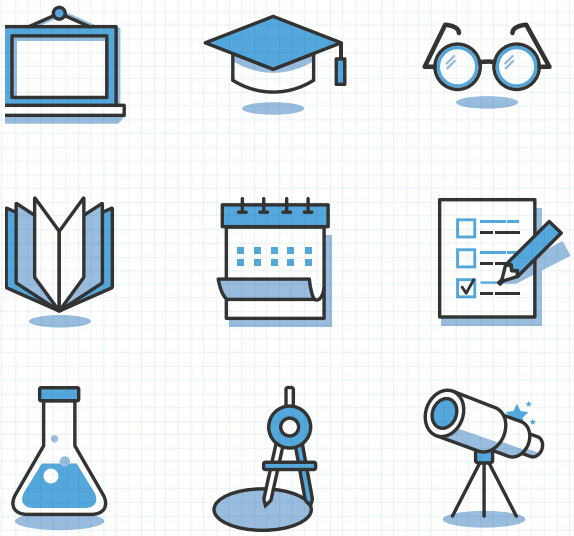

17-1 첨단산업분야 인력양성·공동교육과정 운영시 대학원 학과증설(정원증원) 허용

분 야	#첨단산업분야 #대학원 #학과증설(정원증원)

개선내용

■ **주요 내용**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이 첨단산업분야의 인력 양성 또는 다른 국내 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대학원에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학과 등을 증설하는 기준을 정함

① 대학이 교원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에 따른 첨단(신기술)분야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대학원 총 입학정원 증원 가능

② 대학이 교원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대학 간 협약을 통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대학원 총 입학정원 증원 가능

③ 대학 간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내용은 해당 학과(전공)의 교육과정, 관련 교원 확보 현황, 학생정원 등을 포함

④ 대학이 이 고시에 따른 첨단(신기술)분야 인력양성 또는 국내 다른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입학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심의위원회 구성·검토

■ 함께 보는 규제개선: (대학설립운영규정) 4-2

■ **관련 법령** 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

개선 전	개선 후
〈제정〉	**「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 (이하 생략)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2. 10. 17.] [교육부고시 제2022-27호, 2022. 10. 17., 제정]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18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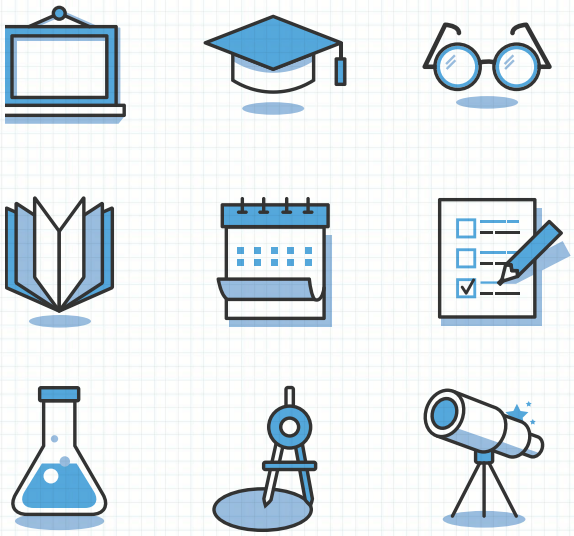

18-1 사립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의 제한적 처분 허용

분 야	#사립학교 #기본재산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위임받아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허용함

가. 다른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교지·교사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처분 범위 구체화 (제2조)

나.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자료 확인 근거 마련 (제3조)

■ **관련 법령**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

개선 전	개선 후
<제정>	**제2조(인정 기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존의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2. 해당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도 다음 각 목의 교지·교사 확보 기준을 초과하거나 교지·교사 확보 기준에 영향이 없는 경우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나.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기준 라.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 마.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기준 바.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기준 제3조(자료 요구) 관할청은 제2조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학교장 의견서 2.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27호, 2023. 9. 1., 제정]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19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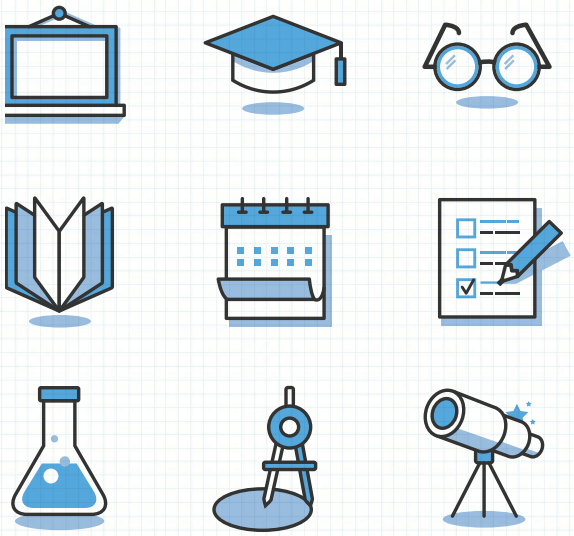

19-1 박사학위과정 신설관련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을 대학 자율로 결정토록 완화

분 야	#박사학위과정의 신설

개선내용

■ **주요 내용**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연구실적을 갖추어야 할 교원의 비율(2분의 1 이상)을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 교원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함께 보는 규제개선** (대학설립운영규정) 4-6

■ **관련 법령**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개선 전	개선 후
제1조(목적) 「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1 이상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할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 교원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할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4. 29.] [교육부고시 제2024-7호, 2024. 4. 29., 일부개정]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20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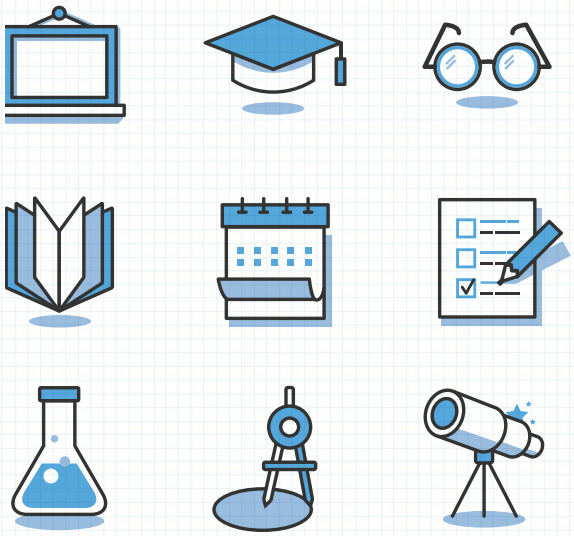

20-1 대학의 통폐합 요건 중 교지요건 폐지

분 야	#대학 #통·폐합
개선내용	■ **주요 내용** 현행 규정은 대학 위치변경인가 요건으로 교사와 교지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되어 운영 중인 대학의 경우 교지요건은 평가하지 않게 됨에 따라, 대학의 통폐합 요건 중 교지요건을 삭제함
	■ **관련 법령**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개선 전	개선 후
제3조(교지·교사의 확보율 기준) ⑤ 교지·교사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3조(교지·교사의 확보율 기준)** ⑤ 교사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12. 19.] [교육부고시 제2023-40호, 2023. 12. 19., 일부개정]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21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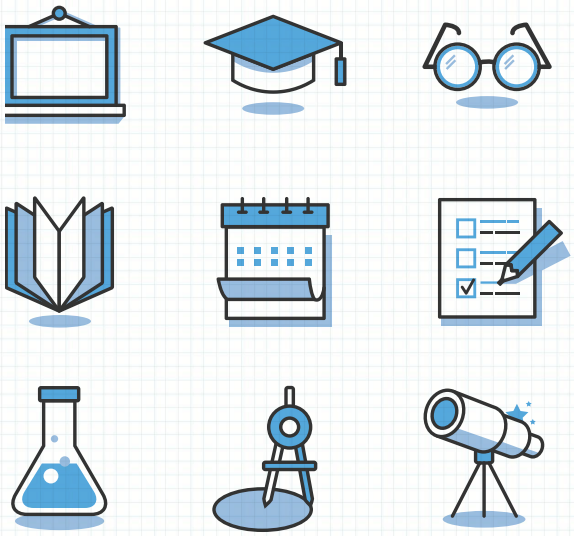

21-1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지역(수도권 제외) 제한 폐지

분 야	#산업단지 캠퍼스

개선내용

■ **주요 내용**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지역(수도권은 제외) 제한을 해제하여 산학연협력 활동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주된 캠퍼스가 위치한 권역 안에서만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

■ **관련 법령**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선 전

제6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기준-위치)
①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학의 주된 캠퍼스가 위치한 별표의 권역안에서만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별표]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운영 가능한 권역 (제6조 제1항 관련)

권역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경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동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권	강원도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개선 후

제6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기준-위치)
①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학의 주된 캠퍼스가 위치한 별표의 권역안에서만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별표]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운영 가능한 권역 (제6조 제1항 관련)

권역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비수도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비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을 제외한 권역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11. 29.] [교육부고시 제2023-38호, 2023. 11. 29., 일부개정]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22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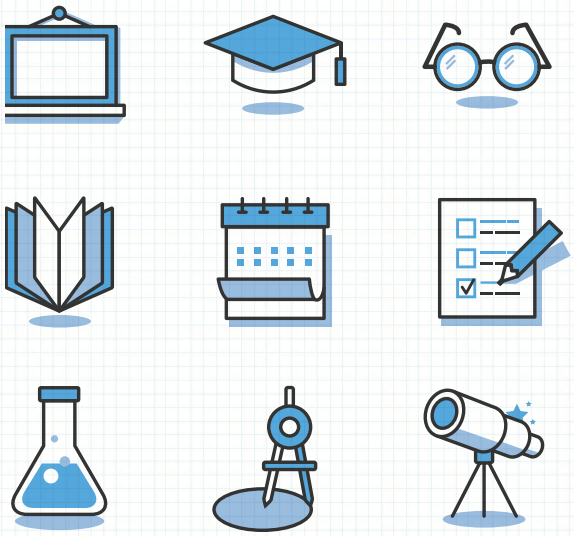

22-1 입학정원의 모집유보제 시행근거 마련

분 야	#모집유보제
개선내용	■ **주요 내용**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를 모집하지 아니하고 유보하는 경우의 기준과 절차 및 유보의 범위를 정함 **① 모집유보 절차 (제2조)** - 대학이 동 제도를 활용하여 입학정원의 모집을 일정기간 유보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교육부장관은 자격기준 충족 등을 검토하여 대학에 통보 ※ 대학이 동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교지, 교사 확보율, 재학생 충원률 등 산정 시 추가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 있으며,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도 대학은 자체적으로 모집을 유보하는 것도 가능 **② 모집유보 기준 (제4조)** -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 평균값을 기준으로 모집유보를 시행할 수 있는 대학의 기준 설정 **③ 모집유보 기간 (제5조)** - 대학이 모집유보를 하고자 할 때 3년간 유지조건을 설정하되, 중도해제할 수 있는 기준 마련 **④ 모집유보 해제 (제6조)** - 최근 3년간 권역별 신입생 충원율을 감안하여 모집유보 해제 범위 등 설정 ■ **관련 법령**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개선 전	개선 후
〈제정〉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이하 생략)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2. 5. 16.] [교육부고시 제2022-15호, 2022. 5. 16., 제정]

22-2 모집유보제 참여대학의 기준 완화 및 모집유보 입학정원의 범위 완화

분 야	#모집유보제

개선내용

■ **주요 내용** 모집유보제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의 기준(신입생 충원율)을 폐지하여 참여대학의 폭을 확대(제4조제1항 삭제, 제2조제2항 삭제)하는 한편, 모집유보할 수 있는 입학정원의 범위를 대학 자율로 결정(제4조제2항 삭제, 제2조제2항 삭제, 제2조제3항 개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관련 법령**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개선 전	개선 후
제2조(모집유보 절차)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제4조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모집유보 여부 등을 결정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해당 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조(모집유보 절차)** ② 〈삭제〉 ③ 대학은 제1항에 따른 보고 후, 모집유보 사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해당 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모집유보 기준) ① 대학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모집유보를 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 평균이 90퍼센트(전문대학은 80퍼센트) 이상인 대학 2.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 평균이 90퍼센트(전문대학은 80퍼센트) 미만인 대학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② 대학이 제2조에 따라 모집유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단 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유보의 경우는 감축계획에 따라 감축하는 정원을 제외한 전체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4조** 〈삭제〉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2. 3.] [교육부고시 제2023-5호, 2023. 2. 3., 일부개정]

22-3 교육대학에 대한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허용

분 야	#교육대학 #모집유보제

개선내용

■ **주요 내용** 교육대학의 탄력적인 입학정원 관리를 위하여 교육대학에 대한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적용 근거를 마련함

■ **관련 법령**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개선 전	개선 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각종학교 및 대학원·대학원대학을 포함하되, 교육대학을 제외한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이하 "모집유보"라 한다)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각종학교 및 대학원·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유보 절차) ① 대학이 이 고시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이하 "전체 입학정원"이라 한다)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30조제3항의 입학정원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이하 "모집유보"라 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모집유보 절차)** ① 대학이 이 고시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이하 "전체 입학정원"이라 한다)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하려는 경우(이하 "모집유보"라 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초등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입학정원은 제외한다) 및 제2호, 제30조제3항의 입학정원은 모집유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삭 제>	② <삭 제>
③ 대학은 제1항에 따른 보고 후, 모집유보 사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해당 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제1항에 따른 보고 후, 모집유보 사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해당 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4. 22.] [교육부고시 제2024-6호, 2024. 4. 22., 일부개정]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23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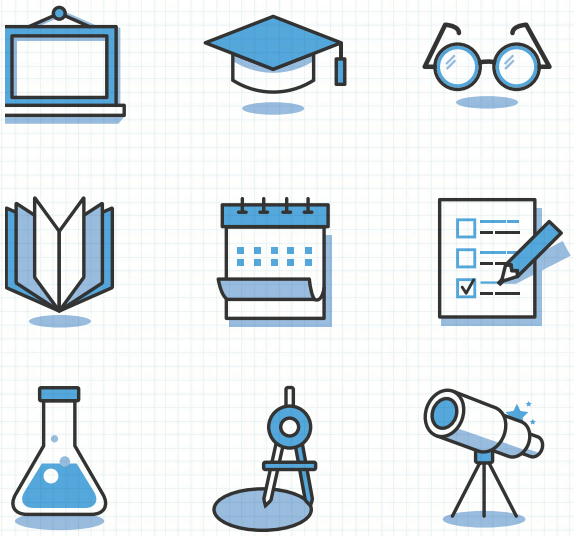

23-1 결손인원을 활용한 첨단학과 운영 중 입학정원대비 결손인원 부족시 대학 자체적 보완 기회 부여

분 야	#첨단산업분야 #결손인원 부족

개선내용

■ **주요 내용** 결손인원이나 편입학 여석이 첨단학과 신입정원보다 부족해질 경우, 부족한 인원 수만큼 차년도의 신입학정원 모집인원에서 감축하여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제3조제1항제1호 개정,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 **관련 법령**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개선 전	개선 후
제3조(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입학정원 기준) ①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활용하여 [별표 1]과 관련성 있는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결손인원 활용 : 대학은 1 · 2학년 중도이탈 학생 수를 반영한 결손인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설 또는 증원분에 해당한 인원을 편제완성연도까지 다른 모집단위 정원에서 감축한다. 2. 편입학여석 활용 : 대학은 편입학여석을 활용하되, 신입학 및 편입학(모집학년:3학년)의 편제 차이를 고려하여 신입학정원과 편입학여석을 1:2의 비율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에 신입학정원 대비 편입학 활용여석 부족 시 부족여석 수만큼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정원외 특별전형 선발인원에서 감축한다.	**제3조(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입학정원 기준)** ①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활용하여 [별표 1]과 관련성 있는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결손인원 활용 : 대학이 1 · 2학년 중도이탈 학생 수를 반영한 결손인원을 신입학 정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증설 또는 증원분에 해당한 인원을 편제완성연도까지 다른 모집단위 정원에서 감축한다. 2. 편입학여석 활용 : 대학이 편입학여석을 신입학 정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입학과 편입학(모집학년:3학년)의 편제 차이를 고려하여 신입학정원과 편입학여석을 1:2의 비율로 대체한다. 3. 대학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첨단산업분야 학과를 운영하는 중 증설 또는 증원분에 해당하는 신입학 정원 대비 결손인원이나 편입학 여석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인원 수만큼 차년도의 신입학전형(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전형을 말하며 편입학전형은 제외한다.) 모집인원에서 감축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편입학여석이 부족할 경우 제2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감축인원을 산정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2. 10. 27.] [교육부고시 제2022-28호, 2022. 10. 27., 일부개정]

23-2 (비수도권) 대학원에 결손인원을 활용한 첨단산업분야 학과신설(정원증원) 허용

분 야	#비수도권 #첨단산업분야 #학과신설

개선내용

■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학원도 대학(학부)과 동일하게 결손인원을 활용하여 첨단산업분야의 학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허용함

① (타 학과 정원 감축 유형) 최근 3개년 간 결손인원 평균 범위 내에서 첨단산업분야 학생 정원증원 후 일시적으로 증가된 정원을 편제완성 다음연도까지 타 학과의 정원을 감축 (제3조의2제1항제1호)

② (타 학과 정원 유지 유형) 최근 3개년 간 결손인원 평균의 1/2 범위 내에서 첨단산업분야 학생 정원 증원 후 증원 정원의 2배 이상을 매년 결손인원으로 확보 시 증원 정원을 계속 유지 (제3조의2제1항제2호)

③ 결손인원 활용을 통한 증원된 인원은 교원·교사확보율 산정 시 해당 인원을 제외하고, 재학생 충원율 산정 시에도 제외 (제3조의2제2항·제3항)

■ **관련 법령**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개선 전	개선 후
제3조의2(대학원의 첨단분야 학과 입학정원 기준)	**제3조의2(대학원의 첨단분야 학과 입학정원 기준)** ① 대학원(이하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관련성 있는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전공)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학원은 전년도 1 · 2학기 중도이탈 학생 수를 반영한 결손인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설 또는 증원분에 해당한 인원을 편제완성 다음연도까지 다른 학과(전공)의 정원에서 감축한다. 2. 대학원은 전년도 1 · 2학기 중도이탈 학생 수를 반영한 결손인원을 활용하되, 신입학정원과 결손인원을 1:2의 비율로 대체할 수 있다. 3. 대학원은 전년도 결손인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입학정원을 증원하여 선발한 인원보다 부족할 경우 차년도 입학정원(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증원된 입학정원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발인원을 감축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입학정원을 증원한 경우 : 부족한 결손인원 만큼 감축 나. 제2호에 따라 입학정원을 증원한 경우 : 부족한 결손인원의 2분의1 만큼 감축 (소숫점 이하는 올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과(전공)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교사 · 교지 등 「대학설립운영 · 규정」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원 정원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8항에 따른 정원외 특별전형 학년별 · 연도별 총 학생수 산정 시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2. 6. 7.] [교육부고시 제2022-17호, 2022. 6. 7., 일부개정]

23-3 (비수도권) 비첨단산업분야의 결손인원·편입학여석 활용한 비첨단산업분야의 학과신설 허용

분 야	#비수도권 #학과신설 #결손인원·편입학여석 활용

개선내용

■ **주요 내용**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은 지역특화산업 등 지역사회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첨단산업분야에서만 적용되던 결손 인원, 편입학여석을 활용한 학과 등의 증설이나 학생증원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함

■ **관련 법령**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개선 전	개선 후
제3조의3(기타분야의 결손인원 등 활용)	**제3조의3(기타분야의 결손인원 등 활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에 따른 첨단산업분야 외의 분야에서도 사회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2. 3.] [교육부고시 제2023-6호, 2023. 2. 3., 일부개정]

23-4 (첨단산업분야 공동학과) 학교 밖 수업 장소제한 완화 및 (공동융합학과) 학교 밖 수업 허용

분 야	#첨단분야 #공동융합학과 #학교 밖 수업

■ **주요 내용** 첨단산업분야 공동학과의 학교 밖 수업이 가능한 장소를 '참여 대학이 위치한 시·도 내'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동융합학과도 첨단산업분야 공동학과의 학교 밖 수업 규정 준용하도록 허용함

■ **관련 법령**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제3조의3(첨단분야 공동학과 운영)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학 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 중 [별표 1]에 따른 첨단산업분야의 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정원 분담규모, 교원 등 해당 학과 운영 제반에 관한 사항을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학과 운영 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참여 대학의 시·도 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 또는 참여 대학과 협약 중인 산업체·연구시설 등에 한하여 학교 밖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4(첨단분야 공동학과 운영)**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학 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 중 [별표 1]에 따른 첨단산업분야의 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정원 분담규모, 교원 등 해당 학과 운영 제반에 관한 사항을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학과 운영 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 또는 참여 대학과 협약 중인 산업체·연구시설 등에 한하여 학교 밖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대학 간 공동융합학과 운영)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 상이한 전공·계열을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공동융합학과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조, 제3조의2 및 제3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제4조(대학 간 공동융합학과 운영)** 대학 간 상이한 전공·계열을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공동융합학과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조, 제3조의2 및 제3조의4를 준용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3. 2. 3.] [교육부고시 제2023-6호, 2023. 2. 3., 일부개정]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24

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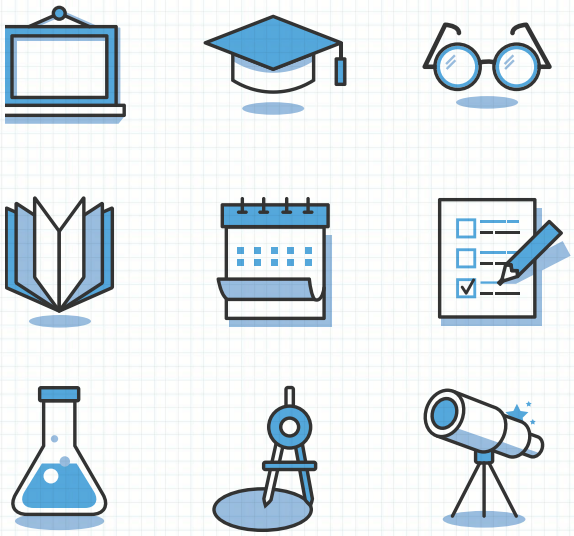

24-1 둘 이상의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분리시 기본재산 분배 절차 마련

분 야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 **주요 내용** 운영 중인 대학의 학교법인 분리 시, 수익용기본재산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새로 설립한 학교법인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시행('23. 9. 19.)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원칙을 신설하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의무교육을 하는 학교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학교에 수익용기본재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함

■ **관련 법령** 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신설〉	**제2조(수익용기본재산 배분 원칙)** ①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호를 위해 「교육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의무교육을 하는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수익용기본재산에 우선 배분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각급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학교법인 설립을 통해 분리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수익용기본재산에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제3조(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① 운영 중인 대학의 학교법인으로서 2개 이상의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학교 중 일부 학교를 새로 설립한 학교법인에 두는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1. 2개 이상의 대학만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각각의 대학의 재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각각의 학교법인에 배분한다. 2. 1개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1개의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운영할 학교법인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용기본재산은 대학을 운영할 학교법인에 배분한다. 3. 1개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2개 이상의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운영할 학교법인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용기본재산은 제1호와 같이 배분한다. 4. 2개 이상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1개의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각각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용기본재산은 대학을 운영할 학교법인에 배분한다. 5. 2개 이상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2개 이상의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제4호와 같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용기본재산은 제1호와 같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배분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재학생 수는 분리하려는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시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최신법령 확인하기

시행시기	[시행 2024. 2. 13.] [교육부고시 제2024-3호, 2024. 2. 13., 제정]

2022-2024
대학 규제개선 성과 자료집

교육부